

생명인품진심

# 전라남도 **도보**

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2023-30호 2023년 6월 1일 (목)

[www.jeonnam.go.kr](http://www.jeonnam.go.kr)

목 차

◇ 조 례

전라남도 조례 제5732호	전라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733호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734호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735호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736호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737호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738호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739호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740호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741호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742호	전라남도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743호	전라남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744호	전라남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745호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746호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747호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748호	전라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749호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750호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751호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752호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753호	전라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754호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755호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756호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예 규

전라남도 예규 제1077호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예규

◆ 고 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3-212호              2022년 해남 남동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7차)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3-226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취소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3-227호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3-228호              강진 덕서지구 대구환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3-22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3-230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3-232호              덕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3-234호              2023년 흡수로 구조물화사업(시군) 시행계획 승인(2차) 고시

◆ 공 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3-609호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실태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3-652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3-661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3-662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3-669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시군 행정

목포시 고시 제2023-83호                      『산정연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시 고시 제2023-238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광양시 고시 제2023-172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 고시  
 광양시 고시 제2023-173호                      광양 도시계획토지확장사업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경계)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시 공고 제2023-1191호                      광양 도시계획시설(백운유원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 공고  
 광양시 공고 제2023-1199호                      광양 도시계획시설(중로 1-12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강진군 공고 제2023-493호                      강진 군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중로2-16(강진만 생태공원진입로) 개설공사 완료) 공고  
 무안군 공고 제2023-571호                      무안 군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신안군 고시 제2023-37호                      신안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유관기관**

광양청 고시 제2023-8호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결정 고시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6. 1.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전라남도 조례 제5732호

### 전라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전라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한다.

- 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2.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3. 창의적·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 4.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적극행정 문화 조성) 교육감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의 행위나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의 행위나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6. 1.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전라남도 조례 제5733호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학생선수에게는 다음 각 호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지원
2. 피복비
3. 대회 참가 중 신체 보호를 위한 보험·공제 가입에 필요한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6. 1.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전라남도 조례 제5734호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중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립금”을 “적립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를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교육감이 재정여건상 교육정책, 학생 복지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6. 1.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전라남도 조례 제5735호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교육기관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으로 학생을 비롯한 교육기관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 기기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각 교육기관별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점검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점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불법촬영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법촬영 점검체계 구축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 및 개선 방안
3.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교육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불법촬영 점검계획을 위한 안내서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불법촬영 점검계획 시행을 위해 교육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불법촬영 예방시설 등 설치) ① 교육감은 불법촬영을 할 수 없도록 교육기관 화장실의 칸막이 빈 공간 등에 가림막을 설치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에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벨 등을 설치한다.

제6조(정기 점검) 교육감은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를 반기마다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제7조(신고체계 마련) 교육감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기관 이용자가 교육기관에서의 불법촬영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을 위해 전라남도 및 시·군,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6. 1.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전라남도 조례 제5736호

###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al) 보호 및 사회적(Social) 기여, 거버넌스(Governance)를 말한다.
2. “이에스지(ESG) 교육”이란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에스지(ESG)의 가치와 실천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3.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 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기관이 이에스지(ESG) 가치를 그 운영에 도입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이에스지(ESG) 교육 방안
3. 교육기관 이에스지(ESG) 운영 방안
4.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지원
5.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6.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7. 그 밖에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2.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교육기관의 교직원, 학부모 등 연수
4. 이에스지(ESG) 실천 캠페인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에스지(ESG)교육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의 운영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2.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지원
3. 시책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감이 임명하는 이에스지(ESG) 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또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 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나. 관계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다. 그 밖에 이에스지(ESG)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이에스지(ESG) 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관한 정보 공유, 연구·조사, 지원 등을 위해 대학, 기업, 관련 기관·민간단체 등과 민관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6. 1.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전라남도 조례 제5737호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시설개선”을 “노후 시설 개선”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매각된 폐교”를 “폐교”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부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
-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전출금
-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제1항 제4호에서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이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제3호, 제5호, 제6호의 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중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6. 1.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38호

###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을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기준 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차감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계통출하조직”이란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를 ““계통출하”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이하 “계통출하조직”이라 한다)에 출하·판매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기준가격”이란 도매시장의 최근 5년간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평균값과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 3의2. “시장격리가격”이란 통계청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공표한 생산비를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9. “주요 농산물”이란 노지에서 생산되는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제3호 및 별표에 따른 채소를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주요 농산물을 계약재배한 농업경영체를”을 “계통출하한 농업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차액 지원은 농산물 경지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최대2만제곱미터까지 지원한다.

제5조제3항 중 “가격안정위원회에서”를 “가격안정위원회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차액 지원은 차액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준가격 고시)”를 “(기준가격 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가격과 시장격리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매년 전라남도 소식지와 누리집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제2항에 따른”을 “그 밖에”로 한다.

-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또는 계통출하조직 등에 출하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중 “농업경영체가”를 “농업인이”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업경영체”를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제목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를 “관한 심의·의결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기준가격
- 1의3. 시장격리가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농업통계조사 규칙

작물의 분류(제2조 관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식량작물	미곡	논벼, 밭벼
	맥류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두류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기타 두류
	잡곡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울무, 기타 잡곡
	서류	고구마, 감자(봄·가을·고랭지)
채소	엽채류	배추(일반·고랭지·김장), 양배추, 시금치, 상추, 미나리, 썩갓, 부추
	과채류	수박, 참외, 오이, 호박(단·일반), 토마토(일반·방울), 딸기, 가지, 메론, 피망(파프리카 포함)
	근채류	무(일반·고랭지·김장), 당근, 토란, 우엉, 연근
	조미채소	고추(멸치:Mulching, 턴널:Tunnel), 마늘(한지형(寒地型)·난지형(暖地型)), 양파(조·중·만생종), 파(대파·쪽파), 생강
특용·약용 작물	기타채소	근대, 달래, 신선초, 기타 채소
	유지작물	유채, 참깨, 들깨, 땅콩
	약용작물	강활, 고본, 구기자,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목단, 방풍, 백지, 백출, 사삼, 산수유, 산약, 소엽, 시호, 오미자, 의이인, 작약, 지모, 지황,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향부자, 형개, 황금, 황기, 기타 약용작물
과수 뽕나무 기타작물	특용작물	박하, 차, 호프, 닥나무, 수세미, 결명자, 농산버섯(양송이·느타리·팽이·영지 등), 기타 특용작물
	기타	면화, 삼, 모시, 왕골, 인초, 해바라기, 아жу까리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김(뽕은감·단감), 자두, 대추, 매실, 유자, 기타 과수
	뽕나무	뽕나무
기타작물	사료작물	호밀, 옥수수, 기타 사료작물(귀리·유채 등)
	전매작물	인삼, 담배
	꽃거름작물	호맥, 자운영, 기타 비료용 작물
	화훼	화훼
	기타작물	관상용 나무, 묘목(소나무, 사과 등), 기타 재배작물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6. 1.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39호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전라남도 소속” 을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전라남도 소속” 으로 한다.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비지급” 을 “여비 지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별표 1” 은” 을 “별표” 는”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의2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으로 본다.
- 제5조를 삭제한다.
- 제6조를 삭제한다.
-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6. 1.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40호

###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시·군 및 읍·면·동 단위로 구성된 복지안전망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가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시·군 및 읍·면·동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둔다.

②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 해소
2.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의료·주거 지원
3. 위기가구의 발굴 및 실태조사
4. 사회서비스 연계 및 민관협력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운영) ①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대표인 대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대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군 및 읍·면·동 여건에 따라 그 인원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시·군의 대장은 도지사가 위촉하고, 읍·면·동의 대장은 시장·군수가 위촉한다.

③ 시·군의 대원은 읍·면·동의 대장 중에서 시장·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시·군 여건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④ 읍·면·동의 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가 위촉한다.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전기·가스·주택 설비 종사자
  3. 우편집배원
  4.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그 밖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가구)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지원하는 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구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5. 그 밖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
2. 간담회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치유 프로그램
4. 우수성과 공유대회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원활한 운영과 전라남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군, 공공기관,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대장 및 대원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대장 및 대원으로 본다.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6. 1.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41호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으로써” 를 “정하고, 전라남도의” 로, “강화하고” 를 “강화하며” 로, “촉진하며” 를 “촉진하고” 로 한다.

제2조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를 “다음과 같다” 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후위기 취약계층” 이란 폭염·한파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인·영유아·어린이·장애인·옥외노동자·기초생활수급자, 상습수해지역이나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17조의2, 제2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지사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기후위기 사회안전망 마련 등)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6. 1.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42호

### 전라남도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습지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습지 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습지보전위원회 설치) 습지 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습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기능을 「전라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습지 관리 및 조성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습지 보전과 관련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습지 관리 및 조성) ① 도지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육역화(陸域化)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水生態界) 보전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사구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유지·보전하여야 한다.

제6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에 관한 시장·군수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공청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

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습지보호지역등의 습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군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습지 보전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도지사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습지보전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홍보·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시·군, 관계 행정기관, 습지 보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습지 관련 사업계획단계부터 정보공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국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6. 1.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43호

### 전라남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개선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 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 2.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 3.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
- 4. 이동노동 및 생활 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
-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 및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6. 1.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44호

### 전라남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를 말한다.
2.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를 위해 이에스지(ESG)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여건조성 및 시책 추진 과정에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및 교육·홍보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실장·국장과 이에스지(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이에스지(ESG) 경영 또는 그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6. 1.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45호

##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노동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외국인노동자 고용 분야별 추진과제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률·노동·고용 상담
2.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문화적응, 교육활동 등 지원 제공
3.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사회 적응 및 안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단체가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6. 1.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46호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6. 1.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47호

###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 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관서”란 전라남도소방본부, 소방서, 119특수대응단을 말한다.
2. “소방활동 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
3. “소방행정”이란 소방정책 추진, 소방관서 조직·인사 등 소방관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4. “소방 법률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 가. 법률자문: 법령 해석, 법률적 의견 제시
  - 나. 소송지원: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형사소송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지원
  - 다. 법률상담: 소방공무원의 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
  - 라. 법률동행: 소방공무원의 사법기관, 수사기관의 조사 동행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 법률지원 추진) ① 도지사는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소방 법률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활동 등 및 소방행정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화재 예방
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구급 활동
4. 소방관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

② 도지사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을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소방 법률지원은 소방관서 및 소방공무원의 참고인 조사부터 지원할 수 있다.

④ 사안별 소방 법률지원의 종료는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제5조(소방 법률지원의 절차) ①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한 소방관서 부서의 장에게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방 법률지원을 추진하거나 제7조에 따른 소방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자료의 관리) ①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 관련 자료에 대하여 개인의 신상을 알아볼 수 없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 결과를 관리하여 다음 해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법률고문의 구성·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법률자문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전라남도 소방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법률고문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법률고문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무성의하게 법률고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5. 법률고문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6. 형사소추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도지사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비밀유지) 소방 법률지원 관계 소방공무원과 법률고문 등은 소방 법률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수당) 도지사는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고문 변호사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6. 1.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48호

### 전라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반려동물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6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과 목표
2. 전문인력 양성
3.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
4. 기술개발 및 연구
5. 국내외 협력 및 정보 교류
6.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국내외 홍보
- 2.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 3.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 4.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5.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반려동물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 개선
- 2. 신제품 개발,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 3. 컨설팅 및 공동브랜드 개발
-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간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6. 1.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49호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조례” 를 “전라남도 환경친화축산 육성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을 “환경친화축산”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이란” 을 “ “환경친화축산” 이란” 으로, “ 존중하는” 을 “ 존중하면서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관련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 을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4조의2제2항 및 별표 1 제1호나목의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으로, “가축사육 소요면적” 을 “가축사육시설 면적”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 「동물보호법」 제29조” 를 “ 「동물보호법」 제59조” 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이란 친환경축산물” 을 “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이란 제16조에 따라 유기·무항생제축산물” 로 한다.

6.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유기축산물과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무항생제축산물을 말한다.

제3조 중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에” 를 “환경친화축산에” 로, “축산농가 등” 을 “축산농가·생산자단체·축산물 유통업자 등(이하 “축산농가 등” 이라 한다)” 으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을 “환경친화축산”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축산농가 등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실천함으로써 친환경축산물 등의” 를 “축산농가는 환경친화축산을 실천함으로써 유기·무항생제축산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을 “환경친화축산”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농가는 친환경축산물” 을 “축산농가는 유기·무항생제축산물”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 「동물보호법」 제9조” 를 “ 「동물보호법」 제11조” 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가” 를 “축산농가” 로 한다.

2.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을 축산농가는 환경친화축산 이행

제2장의 제목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및 지원” 을 “환경친화축산 육성 및 지원” 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계획)” 을 “(환경친화축산 육성계획 수립)”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을 “환경친화축산”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을 “환경친화축산”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을 각각 “환경친화축산” 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동물복지형” 을 “환경친화” 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을 “환경친화축산” 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동물복지형” 을 “환경친화” 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을 “환경친화축산” 으로 한다.

### 3.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의 확대 및 관리 방안

제6조의 제목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정책의 심의)” 를 “(환경친화축산 정책의 심의)”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을 각각 “환경친화축산” 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술 개발 및 지원 등)” 을 “(환경친화축산 기술 개발 및 지원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을 각각 “환경친화축산” 으로 하며, 같은 항 중 “필요한” 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교육 지원)” 을 “(환경친화축산 교육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을 “환경친화축산” 으로, “대한” 을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술의 교류 및 홍보)” 를 “(환경친화축산 기술의 교류 및 홍보)”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군수,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 를 “시장·군수,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로 하며, 같은 항 및 제2항 중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을 각각 “환경친화축산” 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활성화 지원)” 을 “(환경친화축산 활성화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을 “환경친화축산” 으로,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및 축산물 유통업자” 를 “축산농가”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을 “환경친화축산”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동물복지형” 을 “환경친화”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을 “환경친화축산” 으로 한다.

### 2.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농가

제11조 중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을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친화축산” 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친환경축산물 등의 소비촉진 및 평가” 를 “유기·무항생제축산물 등의 소비촉진 및 평가” 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친환경축산물 등의 소비촉진 지원)” 을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소비촉진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등이 동물복지형” 을 “환경

친화” 로, “위하여” 를 “위하여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로, “등을 할 경우” 를 “등에 필요한 비용을” 로, “이를 지원” 을 “지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동물복지형” 을 “환경친화” 로 한다.

제13조 중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를 “축산농가” 로, “동물복지형” 을 “환경친화” 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추진 평가)” 를 “(환경친화축산 추진 평가)”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을 “환경친화축산”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친환경축산물” 을 “유기·무항생제축산물”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동물복지형” 을 “환경친화” 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을 “환경친화축산” 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동물복지형” 을 “환경친화” 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을 “환경친화축산” 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의 지정” 을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의 지정” 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의 신청)” 을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지정의 신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동물복지형” 을 “환경친화”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친환경축산물” 을 “유기·무항생제축산물” 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을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지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물복지형” 을 “환경친화” 으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지정서” 를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지정서” 로 한다.

제17조 단서 중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을 “환경친화축산” 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을 각각 “환경친화축산”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지정에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농가 등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을 “축산농가에서 환경친화축산”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친환경축산물 인증, 안전관리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을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지정 또는 제16조에 따른” 으로 한다.

별표와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축종별 운동장 권장면적  
(제4조제2항제3호 관련)

1. 축종별 권장사항

축종별		운동장 권장면적	권고사항
소	한우	송아지	최소 2.5㎡/두 이상
		번식우 등	최소 5㎡/두 이상
	젖소	송아지	최소 4.3㎡/두 이상
		성우	최소 8.4㎡/두 이상
돼지	임신돈	최소 1.4㎡/두 이상	- 그늘막(차광막), 사료급여 및 음수시설, 분뇨유출 방지턱 설치 - 경관림(편백 등) 조성 - 초지 조성
	비육돈	최소 0.8㎡/두 이상	
닭	산란계 평사 (토종닭)	최소 1.1㎡/수 이상	
	육성계	최소 33kg/㎡ 이상	
오리		최소 0.15㎡/수 이상	
흑염소, 사슴, 산란계(케이지) 및 그 밖의 가축		희망하는 경우 설치	

2. 권장면적 설정기준

- 운동장 권장면적 설정 기준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4조의2제2항 및 별표 1 제1호나목의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에 따른 축종·성장단계·경영형태별 소요면적을 기준으로 설정함
- 흑염소, 사슴, 그 밖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운동장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소요면적은 축사 및 주변 여건에 맞추어 설정
  - ※ 한우·젖소 등의 방사식(갈집 사육) 또는 햇빛투과형 축사시설은 운동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지 서식]

(앞쪽)

제 호

전라남도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지정서

1. 농장명 :

2. 소재지 :

3. 대표자 : (축산업 허가번호 : 제 호)

4. 가축의 종류 :

- 농장규모 : 동 m<sup>2</sup>, 사육규모 : 두(수),

5. 인증 및 지정 내용 :

「전라남도 환경친화축산 육성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 농장을 전라남도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인

(뒤쪽)

변경 사항		
연월일	변경 내용	확인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6. 1.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50호

###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 쌀 가격의 안정과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결식을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쌀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식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아침식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
3. 대학 및 민간과의 지원·협력 체계 구축
4.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해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만족도 등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및 대상) ① 도지사는 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식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6. 1.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51호

###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전라남도” 를 “조례는 전라남도” 로, “여성의 기업지원” 을 “여성기업지원” 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지원 사항)” 을 “(지원 사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를 “도지사가” 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도 및 출자·출연기관이” 를 “도가” 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대한 필요한 지원” 을 “필요한 교육 및 협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을 “판매촉진”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5. 여성기업의 생산·유통 등 역량강화
6. 여성기업의 인식개선
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 기념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2 중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제5조의2, 제7조의2, 제9조에 따른 여성기업 지원” 을 “출자·출연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제7조의2에 따른 여성기업지원” 으로, “경우가 산점” 을 “경우 가산점” 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6. 1.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52호

###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대학” 을 “시설”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외한다” 를 “포함한다” 로, “2년” 을 “5년” 으로 한다.

제4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2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6. 1.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53호

## 전라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스마트수산업”이란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유통·가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수산업 시스템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전라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수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수산업의 전문인력 육성
6.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수산업 지원)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수산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수산업 생산기반시설 조성·설치 및 정비

- 3. 스마트수산업 관련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4.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5. 스마트수산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6.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게는 그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교육 및 컨설팅)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도입 어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우수 어업인·수산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 및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6. 1.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54호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광주지방변호사회” 를 “대한변호사협회”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6. 1.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55호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육훈련 및 각종 업무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부서

제8조제2항 중 “패(牌) 및 부상(금전, 물품은 제외)을 함께” 를 “부상을” 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총무팀장” 을 “포상업무 담당 사무관”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6. 1.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56호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남도의 균형발전과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전라남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를 대표하는 종합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연구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③ 원장은 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체계를 개선하는 등 연구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능)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수행한다.

1. 도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2. 도정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조사·연구
3.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
4.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5. 지방행정, 지역경제 등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관리·배포
6.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 및 분석
7.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이사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장이 선임직 이사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기금
  2. 단체, 기관, 개인 등으로부터 받은 기탁금과 양여나 기부받은 토지 및 건물
  3.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②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 ③ 원장은 연구원의 재산을 성실하게 운영·관리해야 한다.
- ④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⑤ 제7조에 따른 기금을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전담연구원 발전 기금을 설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도와 시·군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과 보조금,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
-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연구과제) ① 연구원은 도지사가 부여하는 과제와 도정에 필요한 자체 선정과제를 연구하고 자문에 응해야 한다.

- ② 연구수행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연구 결과물에 대해 법령과 내부규정에서 징계사유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9조(업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과 지역개발에 관련된 조사·연구 등을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영평가 등)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평가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는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출연기관 연계) 원장은 도 산하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연구자료 공유 및 공동연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상생연구) 원장은 도와 광주광역시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연구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전남연구원은 광주연구원으로 귀속되는 재산 등을 제외한 종전의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의 명의를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한 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관계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의 명의로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다만 광주연구원으로 승계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⑤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의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전남연구원의 임직원으로 본다. 다만, 광주연구원으로 승계되는 임직원과 그 임직원이 행한 행위 등은 광주연구원 설립일에 이 조례 시행일로 소급하여 광주연구원으로 이관된다.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 6. 1.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예규 제1077호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예규

별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목 차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관리대상물)
-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 제8조(규약의 효력)

제 2 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 제12조(의결권 행사)
-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 제14조(업무방해 금지 등)
- 제14조의2(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등)
- 제14조의3(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제15조(배상책임 등)
- 제16조(권리 · 의무의 승계)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 제18조의2(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
- 제19조(임원의 구성)
-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 제21조(보궐선거)
-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 제23조(회의개최)
- 제24조(회의방청)
- 제25조(회의소집절차)
- 제26조(안건의 제안)
-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 제28조(의결방법)
- 제29조(재심의)
- 제30조(회의록)
- 제31조(겸임금지)
- 제32조(운영비)
-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제4장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 제34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 제34조의2(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 제34조의3(필요비용의 지원)
- 제34조의4(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
- 제33조의5(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35조(위원위촉 및 구성)
- 제36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 제37조(해촉)
- 제38조(업무)
- 제39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제40조(회의소집 등 운영)
- 제41조(운영경비)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 제42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 제43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 제44조(직원의 자격 요건)
- 제45조(인사 · 보수 · 책임)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 제46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 제47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 제48조(기존사업자의 재계약)
- 제49조(위·수탁관리 계약)
- 제50조(관리방법의 변경)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 제51조(관리주체의 업무)
- 제51조의2(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
- 제52조(공사·용역사업자 등의 선정)
- 제52조의2(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 제52조의3(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 제52조의4(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 제52조의5(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 제52조의6(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 제52조의7(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 제53조(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사업자 입찰참가 제한)
- 제54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 제55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 제56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 제57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
- 제57조의2(주민공동시설 이용 등)
- 제58조(층간소음 생활수칙 등)
- 제58조의2(층간소음 관리위원회)
- 제58조의3(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 제58조의4(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 제58조의5(간접흡연의 방지 등)
- 제59조(보험료 등)
- 제60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 제60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 제61조(직무교육 등)
- 제62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제9장 관리비등

- 제63조(관리비예치금)
- 제64조(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
- 제65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 제66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 제67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제68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제6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제70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 제71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 제72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 제73조(관리비등의 연체료)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 제74조(회계처리기준)
- 제75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 제76조(보증설정)
- 제77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 제78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 제79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 제80조(회계감사기준)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제81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
- 제82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제12장 규약의 개정

- 제83조(규약의 개정)
- 제84조(규약의 공포)
- 제85조(규약의 보관)

제13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 제86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 제87조(삭 제)
- 제88조(삭 제)
- 제89조(삭 제)

제14장 벌칙

- 제90조(위반금 등)
- 제91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제15장 보 칙

- 제92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
- 제9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준용)
- [별표 1] 관리대상물(제4조 관련)
-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제5조제2항 관련)
- [별표 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안)(제32조제2항 관련)
- [별표 5] 공동체활성화 단체 운영 규정(안)(제34조제1항 관련)
- [별표 5-별지 제1호서식]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 [별표 5-별지 제2호서식] 사업비교부 신청서
- [별표 6]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제45조제1항 관련)
- [별표 7]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 계약서(제57조제7항 관련)
- [별표 8]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제67조 관련)
- [별표 9]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제68조제1항 관련)
- [별표 10] 사용료의 산정방법(제68조제2항 관련)
- [별표 11]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제73조 관련)
- [별표 12]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
- [별표 12-별표1] 관리비, 공동사용료 부담액 산정방법
- [별표 12-별표2]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수입의배분 산정방법
- [별지 제1호서식] 입주자명부
- [별지 제2호서식] 동별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
- [별지 제4호서식] 안건제안서
- [별지 제5호서식] 재심의 요청서
- [별지 제6호서식] 회의록 작성 서식 및 방법(제30조제1항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당선증(임원)
- [별지 제8호서식] 당선증(동별 대표자)
- [별지 제9호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 내역서
- [별지 제10호서식] 용역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 내역서
- [별지 제11호서식]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의견청취
- [별지 제12호서식] 사업수행실적 평가표
- [별지 제13호서식]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
- [별지 제14호서식] 정보공개 요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별지 제16호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 [별지 제17호서식] 잠수입 수납현황 및 사용내역

[별지 제18호서식] 접수입 수납영수증

[별지 제19호서식] 도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 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 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회 등을 말한다.
2. “중입”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연입)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3. “의결권”이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등 관리에 따른 투표 등에 참가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제 규정”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5. “잡수입”이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6. “관리비등”이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말한다.
7. “주민공동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약은 전라남도 ○○시(군) ○○동(읍,면) ○○로○번길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리대상물) 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유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건물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동 건물의 복도·계단·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그 밖의 공용부분: 제1호의 주거공용부분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어린이집·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에 법 제9조에 따른 공

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리사무소 직원을 둘 수 있다(각 공동주택 단지의 실정에 맞게 정함).

1. 소장 1명
2. 과장 ○명, 계장 ○명, 대리 ○명, 주임 ○명
3. 경비(관리)원 ○명, 미화(외곽미화 포함) ○명, 그 밖의 직원 ○명

제7조(규약 등의 준수 의무) ①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규약, 제 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② 입주자등,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 사항은 법 제71조에 따라 각 시·군별로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자문 및 관련분야 교육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제8조(규약의 효력) ① 이 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① 입주자등은 법, 영,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1. 전유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 진술권
6.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산 제청권
7. 그 밖에 규약에서 정한 권리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①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1. 공동관리의 경우

-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 다. 공동관리하는 기간
-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 가. 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 나.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 다. 구분관리하는 기간
- 라.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도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담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1세대의 주택을 2명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명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삭제>

③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제39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시에는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을 따른다.

④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입주자명부에 등재되어있는 입주자등에 한정하며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및 공용부분을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업무방해 금지 등)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 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법 제6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이하 “공동주택 내 괴롭힘”이라 한다)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3(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③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를 입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입주자등의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입주자등의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을 훼손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유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입주자등은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유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등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특별승계인의 경우에는 공용관리비에 한정하여 승계하며 사용료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결산 처리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구를 정하고, 총 ○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다.(다만, 선거구별 최소 세대수와 최대 세대수는 2배 이하로 한다.)

- 1. 제1선거구: 1명 (예 : ○동, ○동, ○동 ~) (○○○세대)
- 2. 제2선거구: 1명 (예 : ○동, ○동, ○동 ~) (○○○세대)
- 3. 제3선거구: 1명 (예 : ○동, ○동, ○동 ~) (○○○세대)
- 4. 제4선거구: 1명 (예 : ○동, ○동, ○동 ~) (○○○세대)
- 5. 제5선거구: ~

② 선거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 또는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조정된 선거구는 다음 임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월 ○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월 ○일까지(2년)로 하며, 중임제한은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②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남은 임기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다.

제18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영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회장과 감사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선출할 수 있다.

- 1. 회장은 영 제12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선출한다.
- 2. 감사는 영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선출한다.

제19조(임원의 구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

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단지 건축 당시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임원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및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임원은 최초로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회장 1명
2. 감사 ○명(2명 이상)
3. 이사 ○명(1명 이상)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간으로 하고,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 자격도 상실된다.

③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이하 “이사”라고 한다)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임기 중 사퇴 및 해임 등으로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다만,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아닌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사는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해야 하고,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해야 한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직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정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 및 상해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게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8.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3회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9.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회의 중 의장의 동의 없이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

포함)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

10. ○○시장(군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행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

②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1. 동별 대표자: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영 제13조제4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해임 결정

2.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제19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영 제13조제4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해임 결정

3.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제2호의 임원은 제외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결정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 당사자에게 5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 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투표일 10일 전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30일 이내에 투표실시 등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임원의 경우 그 직무도 함께 정지 된다.

⑤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하여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효력은 제출한 동시에 나타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해임이 결정되거나 자진하여 사퇴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제21조(보궐선거) 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그 공석이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그 공석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③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 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 2의2. <삭 제>
3. 투표일시 · 장소 · 방법
4. 후보등록기간
5.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6. 후보등록서류

- 가. 별지 제2호서식의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 나.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바.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 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후보등록자격

8. 그 밖에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즉시 확정 공고해야 한다.
-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공고를 해야 한다.
- ④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 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회의 개최)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영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회의 소집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아닌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삭 제>
2. <삭 제>

-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반기별, 월, 연) 1회 개최한다. (규약에 따라 달리 정 할 수 있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때
4.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는 때
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안전을 제출한 해당 분야 관리책임자 및 입주자등은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전을 보고하고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회의 방청) ① 의장은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의 시작 전까지 회의 장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회의(제52조제1항의 회의 포함) 방청을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회의를 방청하게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방청을 제한한다.

1. 흥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전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고성,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그 밖에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5조(회의 소집 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전 및 입주자등의 방청 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회의일시·회의장소, 회의안전 및 방청 방법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이때의 회의 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한다.

1. 입주 초기 또는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의무관리대상 전환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
2.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원 사퇴하거나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구성하여야 하는 경우
3. 회장·이사가 사퇴, 해임 등으로 인해 공석인 경우

제26조(안전의 제안) ① 안전은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 제안서에 따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혼합주택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또는 입주자등(○○명 이상)이 제안할 수 있다.

② 안전을 제안하는 자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비용추계서, 근거 등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회장(제25조제2항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거나 반복적인 제안 및 법령 등에 위반되는 안전 등은 제외한다.

④ 재난, 안전 등의 긴급상황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에 참석하고 참석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안전은 해당 회의에서 결정할 수 없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규약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정원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의결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할 것
2. 영 제3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작성은 5분의 4 이상의 입주자가 할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의결할 안전과 세부 자료를 ○○일 이상 공고한 후, 전체 입주자들의 10분의 1 이상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체 입주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영 제14조제2항제17호에서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과 같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영 제8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5.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들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사람의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
8.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
9.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의 계약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0.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11. 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안전에 관한 사항

12.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14.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15. 관계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제28조(의결 방법)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제27조제1항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 ③ 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일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29조(재심의)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제3항이 완료되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2. 제19조제4항에 따른 감사
  3. 전체 입주자들의 20분의 1이상의 연서를 받은 사람
-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다시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재심의요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제30조(회의록)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 내용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관리주체가 회의록을 보관·집행하도록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②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1항의 회의 결과(회의록 포함)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진행사항을 녹화 및 녹음하여 실시간으로 입주자들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입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다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해야 한다.

제31조(겸임 금지) ① 회장, 감사 및 이사는 상호 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선거관리위원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조합의 설립·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해산위원회 등을 모두 포함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이 제2항의 겸임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겸임 금지 사항을 해소해야 한다. 기한까지 해소하지 않을 경우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겸임 금지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정지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고하여 입주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운영경비) ①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비: 1회 〇〇〇원 이내(1명당 연간 〇〇〇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회의 출석 수당: 1회당 〇〇〇원 이내(월 〇〇〇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회장 업무추진비: 매월 〇〇〇원 이내(연간 〇〇〇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감사 업무추진비: 감사 1회당 〇〇〇원 이내(1명당 연간 〇〇〇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삭제)
6. 제7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② 제1항에 따른 「〇〇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 규정」(이하 “운영경비사용 규정”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경비사용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 이상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고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 입주자들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④ 관리주체는 운영경비사용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14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관리자로서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4장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제34조(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 및 활동 지원) ① 단지 내 입주자들은(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10명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운영 규정」은 별표 5와 같이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와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방법, 기대효과 및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주체에 제출해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사업비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공동체 활성화단체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지해야 한다.

제34조의2(공동체 활성화단체의 기능)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보육시설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자등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활동의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

제34조의3(필요비용의 지원)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잡수입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②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제34조의4(공동체 활성화단체의 활동 제한)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다.

②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제1항 및 3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으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34조의5(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입주자 등 상호 간 또는 입주자 등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담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고 소정의 사례비(현금 외에 명칭을 불문하고 단지 내에서 물품,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봉사점수 등을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담운영자는 단지 내·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외부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5조(위원위촉 및 구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명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

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사람 ○명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사람 ○명
3.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사람 ○명
4. 제2조제1호의 ○○노인회에서 추천한 사람 ○명
5. 제4호를 제외한 제2조제1호의 공동체 활성화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명
6.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명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공고기간: 신청자 접수 7일 전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2. 공고장소: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
3. 공고내용: 신청 접수기간 및 장소, 신청자격, 모집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방법

④ 선거사무 사유발생 30일이 경과하여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아 선거사무 업무가 지연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아파트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회장은 위원들이 선거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1. 입주자등: 제41조제1호에 따른 금액
2. 외부인: ○○○원

⑤ 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⑥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관계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공동주택 선거관리 매뉴얼을 참조하여 「○○아파트 선거관리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⑦ 위원장(궐위 시 관리사무소장)은 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즉시 공고해야 한다.

제36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30일 전 제35조에 따른 위촉의 과정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동별 대표자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전에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임기가 남은 사람

제37조(해촉) ① 위원의 해촉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중(직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에 한 행위에 한정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때
3. 동별 대표자 및 임원선거 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때
4. 선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5. 선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때
6.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를 위원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회의 중 위원장의 동의 없이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 포함) 이상 불참할 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5일 이상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1. 전체 입주자들의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사람
2. 위원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 업무 등으로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전체 입주자들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해촉 요구서를 회장에게 제출하면 회장은 해촉 요구자가 입주자등인지 확인 후 위원 전원을 해촉한다.

④ 위원이 자진하여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 도달과 함께 나타난다. 다만, 사퇴일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명시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제38조(업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 규정의 제정·개정(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
4.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업무(서면동의 업무를 포함한다)
6. 별지 제7호서식의 당선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당선증 교부
7.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위원의 사퇴 접수 처리
8.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법 제8조제1항의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결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투·개표업무(서면동의 업무를 포함한다)
9.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 9의2.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 및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 이용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

10.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주민 동의 사항)

제39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 또는 해임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4. 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② 입주자등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40조(회의소집 등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촉 등으로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공석일 때에는 위원장(위원장이 공석인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추천한 사람에게 30일 이내에 다시 위원을 추천하게 해야 하며, 추천이 없는 경우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제35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모집하여 위촉한다. 다만, 위원 전원이 공석일 때에는 회장, 이사, 관리사무소장의 순으로 위촉 절차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해야 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파트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아파트 선거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1조(운영경비) 영 제23조제3항제9호에 따라 수립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원의 출석 수당: 1회당 ○○○원(월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의2. 투표 수당, 개표 수당: 1회당 ○○○원(제1호 및 같은 날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고,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표·개표 완료 시까지를 1회로 보며,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투표 수당, 개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선거홍보물 인쇄비
3.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5. 전자투표 시 소요되는 비용

####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2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①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4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하며, 기술인력은 법, 영,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서 겸임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겸임 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①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44조(직원의 자격 요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본인, 배우자 및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제45조(인사·보수·책임)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파트 근로자 인사 및 복무 관리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6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방법)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7조에 따라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입찰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표준 입찰 내역서를 포함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 유지 등의 사업자 선정 시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입찰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비·청소·소독 등 용역사업자 선정 시 표준 입찰 내역서를 포함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에서도 이와 같다.

제47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을 하려면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만료 ○○일 전까지 10일 이상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서를 전체 세대에 배부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4. 다시 계약할 경우의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5.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계약 할 수 있다는 내용
6. 전체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재계약 부동의 포함)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는 입찰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는 내용
7. 이의제기 및 참가제한 의견 제출방법,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이의서는 대표자를 정하여 연서로 제출 할 수 있으며, 제출기간은 최소한 5일 이상으로 하고 제출장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되 관리사무소는 배제해야 한다.)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8조(기존사업자의 재계약) ①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제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함)와 재계약을 하려면 계약만료 45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수행 실적 평가 집계표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을 받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실적 평가의 절차와 방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를 준용 한다.

제49조(위·수탁관리계약) ① 회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별표 6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회계연도 등을 고려하여 ○년(예시 : 2년, 3년)의 범위 내로 하며, 착오 등으로 계약기간을 초과한 경우 관리주체는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관리주체는 위탁·수탁관리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수탁관리 계약 시 주택관리업자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보수 등을 재위탁을 할 경우에 그 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⑤ 위탁·수탁관리 계약 시 위탁관리기구 구성은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0조(관리방법의 변경)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거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3조의 절차에 따라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

###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1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제1항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제5호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란 다음과 같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용역 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4.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
6.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7.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시 특별한 사유 없이 회피 또는 거부할 수 없으며, 원활한 감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경비원(외부 위탁 경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에서 채용한 경비원에 대하여는 「경비업법」 제15조의2를 따른다.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⑦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51조의2(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제52조(공사·용역사업자 등의 선정) ① 관리주체는 법 제25조와 영 제25조에 따라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선정한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한다.

제52조의2(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적격심사제만 적용할 경우에는 제52조의3을, 최저(최고)낙찰제만 적용할 경우에는 제52조의4를, 적격심사제 원칙이나 최저(최고)낙찰제를 혼용할 경우에는 제52조의 5를, 최저(최고)낙찰제 원칙이나 적격심사제를 혼용할 경우에는 제52조의6을 적용한다.

제52조의3(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에 따라 평가한다.

제52조의4(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낙찰제(물품의 매각이나 잡수입 등의 취득을 위한 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최고낙찰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제52조의5(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낙찰제(물품의 매각이나 잡수입 등의 취득을 위한 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최고낙찰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에 따라 평가한다.

제52조의6(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낙찰제(물품의 매각이나 잡수입 등의 취득을 위한 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최고낙찰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에 따라 평가한다.

제52조의7(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제2항에 따라 낙찰의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7에 따라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낙찰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원 이상
2. 용역: ○○원 이상

③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에 따라 평가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계약자가 관리주체인 경우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제53조(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입찰참가 제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개월(○○일) 전에 입주자등의 만족도를 청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54조(계량기 점검 및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점검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계량기 점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계량기를 재검정 받거나 검정 받은 계량기로 교체해야 하며, 배터리 내장형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봉인을 훼손하지 않고는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점검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많을 경우 등 고장이 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등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같은 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해야 한다.
-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해서는 아니 된다.
- ⑦ 관리주체는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⑧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계량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량기의 검침값 조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할증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55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료의 보존기간은 주택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서 최소 5년 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준공도면 및 장비이력카드는 영구보존해야 한다.

1. 이 규약 및 제 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지원금을 수령하는 공동체 활성화단체 회의록(녹음, 녹화물을 포함한다.)
  6.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및 잠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계약서, 도면, 내역서, 설계변경, 입찰 참여업체의 제출서류 전부 및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사업수행 실적 평가표를 포함한다)
  9. 입주민의 민원처리 기록부(전화, 방문, 서면민원 포함)
  10.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사용내역
  11.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 ② 입주자등 또는 혼합주택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포함)가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보공개요청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되, 법 제27조 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처리해야 한다.
1. 열람요청 시: 즉시(영상물 촬영 및 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 시: 복사수수료(단면 1매당 흑백은 ○○원, 컬러는 ○○원)를 납부한 날부터 ○일 이내 사본 교부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잠수입으로 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회의록
2. 관리비등의 부과내역(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내역,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출내역과 그 적립금, 기타 회계자료 등)
3. 이 규약 및 제 규정,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
7.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공고 내용, 선정결과 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 등
9. 법 제26조제3항의 회계감사 결과
10. 영 제26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제56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 단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 1)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순수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 2)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 1) 세대 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등)등을 하는 행위, 다만, 제6호에 따라 입주민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 3)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 4)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도로공사 및 이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 5) ○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 2) 입주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 1)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 2)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 3)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를 포함하여 통로식은 당해 통로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다),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 2)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 3) 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만 해당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들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들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제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태양광 모듈,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주변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할 것

6. 전유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을 것(이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직상하층을 포함한 인접세대의 동의를 포함하여 통로식은 당해 통로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

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대하거나 위탁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 ② 관리주체가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의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개월(○○일)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들에게 재계약 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다.
  -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퍼센트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현원(계약 시점 직전의 1년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하며, 최초의 경우 정원)으로 산정한다.
  - ⑦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에는 별표 7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최초 입주 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어린이집 운영방법을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 중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기간 및 임대료는 제6항을 준용하되 어린이집 이용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⑨ 이 조문에서 용어의 정의 및 해석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57조의2(주민공동시설 이용 등)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의2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이용자의 범위: 단지 정문경계로부터 ○km 이내의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등
2.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8조(충간소음 생활규칙 등)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충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 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의 충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③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1.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시키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④ 관리주체에서는 제2항과 제3항의 충간소음 방지를 위한 생활규칙을 게시하거나 주 1회 (단지 사정에 따라 격주 1회 등으로 할 수 있다) 방송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제58조의2(충간소음 관리위원회)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충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충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충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명 (1명 이상으로 규정), 관리사무소장 1명,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지 사정에 따라서는 부녀회 또는 경로회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1명 이상으로 규정) 이상을 포함하여 총 ○명(단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5명 내외로 구성)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충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충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충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충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58조의3(충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① 충간소음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충간소음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 자문을 할 수 있고, 위원이 충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충간소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충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한다.

제58조의4(충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① 충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 충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충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

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 또는 해당 당사자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등에게 전라남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시(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해당 시·군의 조례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58조의5(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

제59조(보험료 등)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해야 한다.

1. 화재보험: 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2. 시설물사고보험: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공동시설 및 도서관 관련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60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각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보수에 관련되는 유지관리지침서, 준공도면 등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영구 보존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및 대피요령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할 수 있다.

제60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등은 「지능형 홈네트

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61조(직무교육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관련하여 가입하고 있는 협회의 회비를 복리후생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62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① 영 제10조제4항제6호에서 “관리규약과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및 공동체 활성화단체 현황
4. 그 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1. 관리비에치금의 내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9장 관리비 등

제63조(관리비에치금)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관리비에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종전의 소유자에게 관리비에치금을 반환해야 하며, 새로운 소유자는 관리주체에 관리비에치금을 예치해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에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64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해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 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월별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자료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제65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15호 서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은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다.

③ (삭제)

제66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잡수입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제34조의3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 지출잔액에 대하여 100분의 60 이상은 공동관리비로 차감하며, 나머지 잔액은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④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우선 지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리주체는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동체 활성화단체 지원비용
2.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범대 운영, 경로잔치 등)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온라인투표 등)
4.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 지원비용
5. 소송비용(단, 입주민 등의 전체이익에 일치해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정함)
6.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

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정하여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⑥ 잡수입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잡수입 수납현황 및 사용내역에 따라 작성하여 매월 공동

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입(광고, 승강기, 주차장, 재활용품 매각 등)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잡수입 수납영수증 및 지출 증빙자료를 5년간 관리 및 보관한다.

⑧ 혼합주택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분배한 후 제2항부터 제7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67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8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관리비가 과다 징수된 경우 과다징수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납입고지서 배부 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다음 달 관리비에서 차감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 납입고지서에 같은 평형 세대의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비등의 최대, 최소 및 평균 관리비를 고지해야 한다.

제68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9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0에 따른다.

③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 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다음 달 사용료에서 차감해야 한다.

제6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영 제31조제1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이란 다음과 같다.

1. ○○○○년부터 ○○○○년까지: ○○퍼센트 (예: 10퍼센트)
2. ○○○○년부터 ○○○○년까지: ○○퍼센트 (예: 30퍼센트)
3. ○○○○년부터 ○○○○년까지: ○○퍼센트 (예: 60퍼센트)
4. ○○○○년 이후 100퍼센트

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제1항이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70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71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다음 달 ○○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공휴일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당월 거주일수]×105퍼센트(편차율 가산)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2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관리비 및 사용료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잡수입 총액과 관리비 차감에 사용한 잡수입 총액, 이로 인해 차감된 세대별 관리비 인하액 등을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에 포함해야 한다.

④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등부터 먼저 납부해야 한다.

⑥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해야 한다.

제73조(관리비 등의 연체료) 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 표11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74조(회계처리기준)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75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인장은 각각 보관한다.

제76조(보증설정) ①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〇〇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〇〇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기타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제45조의 「〇〇아파트 근로자 인사 및 복무 관리 규정」에서 정한다.

제77조(회계감사인 선정제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에 따라 회원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정한다)

3.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78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감사인 및 감사투입시간 포함)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법령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 여부 확인 및 안내

제79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해야 한다.

1. 적시성: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될 것
2. 완전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할 것
3. 간결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할 것
4. 논리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할 것
5. 정확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힐 것
6. 공정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따른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하지 않을 것

제80조(회계감사기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81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 전유부분은 입주자들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제82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입주자등이 부담한다.

### 제12장 규약의 개정

제83조(규약의 개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투표·개표업무를 요청해야 한다.

1. 법, 영, 규칙 및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안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②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및 조항별 개정 사유 등을 별지 제19호서식의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한 규약을 작성하여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고하고, 제8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약 개정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규약의 개정이 완료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와 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4조(규약의 공포) 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해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제85조(규약의 보관)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의 사본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3장 혼합주택단지 관리

제86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영 제7조에 따라 정한다.

② 영 제7조에서 정하지 않은 공동결정에 관한 사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및 임대사업자가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여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별표 12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사용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

어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는 세대의 임차인에게 입주자등과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제87조 (삭제)
- 제88조 (삭제)
- 제89조 (삭제)

제14장 벌칙

제90조(위반금 등)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단, 제2호의 위반금 부과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1차: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만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금의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수입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1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따른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15장 보칙

제92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개정된 제 규정은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고해야 하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9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준용) ① <삭제>

② 법, 영, 규칙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아파트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다만, 이 규약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관리규약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된다.

[별표 1]

관리대상물(제4조 관련)

단 지	명 칭	○○아파트					
	위 치						
	대지면적	㎡	사업주체				
	사업승인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년 월 일		
	건 폐 율	%	용 적 율		%		
건 물	건물구조						
	난방방식						
	주 택	유 형	·복도식 등 ·계단식 등				
		동 층 별 수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수	개동				
	세 대 수	세대	출입구 수		통로		
	건축면적	㎡	연 면 적		㎡		
분양면적	·분양면적 ㎡ 세대 ·분양면적 ㎡ 세대	·분양면적 ㎡ 세대 ·분양면적 ㎡ 세대					
부 대 · 복 리 시 설	관리사무실	연 면 적	㎡	경비실	개소	개소	
	경 로 당	연 면 적	㎡		CCTV 설치	모니터 대	
	입주자집회소	연 면 적	㎡			카메라 대	
	어린이놀이터	총 면 적	㎡ ( 개소)				
	주민공동시설	○○장	면적 ㎡	○○장	면적 ㎡		
	주 차 장	주차대수	대	·지상 대 ·지하 대			
	오수정화조	1일 처리용량 톤(처리방식: )					
	공동저수시설	용 량	톤	지하수조	톤		
				고기수조	톤		
	지하음용수	용 량	톤/h	설치장소	개소		
승 강 기	제조회사		대 수	인승 대			
기 타	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 전 화배선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범 위
1. 천장·바닥 및 벽	·세대 내부의 마감 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간장치 등의 시설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계량기 등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계량기의 교체 비용은 해당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예산에 반영한 때에는 수선유지비로 부담할 수 있다.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범 위
1. 건물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li> <li>· 그 밖에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li> </ul>
2.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li> <li>·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 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 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li> <li>·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용선로설비, 우편물수취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li> <li>· 그 밖에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li> </ul>
3. 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li> <li>·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기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li> </ul>

[별표 4]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 규정(제32조제2항 관련)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제8호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정하고, 사용내역의 공개와 공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입주자 등의 신뢰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규약 제32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란 규약 제27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비, 업무추진비, 교육비, 자문비, 각종 경비 등을 말한다.

② 그 외 용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및 규약 제2조에 따른다.

제4조(회계연도) 공동주택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회계처리원칙) ① 운영경비사용에 대한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경비사용에 대한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회계담당)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개설된 관리비등 통장에 보관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제7조 (회계장부 등)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지급영수증
3. 구입과 지출 증빙서류

### 제2장 운영경비의 구성 및 기준 등

제8조(운영경비의 구성)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다.

1. 회의비: 전체회의, 임원회의, 기타위원회 등 회의진행 시 필요한 다과·음료, 기타용품 구입비 및 회의출석수당
2. 업무추진비: 회장, 감사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3. 실비보상금: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행하는 확인, 점검, 견학, 검토 및 조사 등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등 실제소요경비(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을 경우는 제외)
4. 교육비: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비

5. 보험료: 규약 제7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 가입비용 제9조(운영경비의 기준금액) 운영경비의 기준금액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총 운영경비는 세대당 월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실비보상금은 증빙서류에 따라 정산하며, 월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육비는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에 교육주체가 교육비 납입이 필요한 금액으로 하며, 주택관리 관련 전문가 자문 시 자문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보험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5. 월별 운영경비 중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연도로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운영경비의 정산) 운영경비의 정산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모든 운영경비는 사용내역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회계담당자가 관리한다.
2. 회의비는 참석부, 회의록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3. 업무추진비는 해당자에게 현금 지급증으로 갈음한다.
4. 실비보상금은 실제 소요된 비용에 한해 증빙서류(신용카드 명세서, 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정산하되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사항은 업무추진자의 추진과정정보고서로 대체하며, 추진과정 보고서로 대체하는 비용은 각 비용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단, 교통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5. 회의출석수당 및 업무추진비는 개별 동별 대표자(임원 포함)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제11조(운영경비 확보) ① 운영경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당해 회계연도 운영경비 예산을 편성 및 승인하고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차질 없이 관리비가 부과 및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운영경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 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전을 상정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었을 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및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 예산을 편성하고,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14일 이내 해당 예산안을 재심의 하여야 한다.

### 제3장 운영경비의 결산 등

제12조(운영경비 사용내역보관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매월 지급되는 운영경비의 사용내역을 운영경비회계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해당 내역을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열람 및 복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매월 운영경비의 수입 및 지출현황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관

리비부과내역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들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년 말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결산보고서를 상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완료된 결산보고서는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4조(인수·인계) 관리주체가 변경 될 경우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운영경비 사용관계서류 전부와 수입·지출내역을 정리하여 그 잔액과 함께 새로운 관리주체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정의 개정) ① 이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2주 이상 공고하고 서면으로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입주자 등의 1/2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 규정(제34조제1항 관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34조 및 34조의5에 따라 입주자 등의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유도하며, 자발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의 봉사활동 등 건전한 커뮤니티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규약 제34조 및 제34조의5에 따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정된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활동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공동체 지원 이사”란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단체 또는 구성 중인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활동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동별 대표자 중 입주자대표회의 이 사 중 회장이 선임한 자를 말한다.

②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봉사회, ○○노인회 등을 말한다.

③ “공동체 활성화단체”란 규약 제34조의 내용에 따라 단지 내 입주자 등(필요시 구성원 의 전문가, 시민단체, 주변지역주민 구성원을 포함한다)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 다.

④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입주자 등의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공동주택과 그 주변의 공동체의식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봉사활동을 위한 재능기부, 문화행사 개최
2.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간 교류 및 공동협력사업(단순친목도모, 취미활동 등은 제외 한다.)
3. 공동보육시설 운영

⑤ 그 외 용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및 규약 제2조에 따른다.

제2장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설립 및 사업비 지원 등

제4조(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설립 등) ①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입주자등 10인 이상으로 구성 된 자생단체 중 대표자를 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설립 된다.

② 구성 준비 중인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공동체 지원 이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협조하 여야 하며, 공동체 지원 이사로부터 단지 내·외부에서 시행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

한 안내, 사업계획 수립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 등) ①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공동체 지원 이사는 제4조제1항의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제2항의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 관련서류의 적정성 및 구비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생단체에 보완,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지원 심사 및 교부) ① 공동체 지원 이사는 제5조에 따라 신청된 내용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재정상태 및 사업의 우선순위·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지원 이사의 보고 및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의 총합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잠수입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된 사항을 공동체 활성화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통보된 사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비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통보 후 ○일 이내에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사업비 교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비 지원을 취소하며, 취소된 사업비는 잠수입 관리계좌로 환원한다.

④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사업비 교부신청 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사업비 및 지원할 사업비내역을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 후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확정된 전체사업비 및 해당 공동체 활성화단체에 지원할 사업비내역을 ○일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고하여 입주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제5항에 따른 사업비내역의 공개 완료 후 ○일 이내에 공동체 활성화단체에 지원할 사업비를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구성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자생단체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3장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운영

제7조(전담운영자 지정) ① 체계적인 활동 등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전담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실비 보상차원으로 사례비를 매월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례비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당해 사업비에서 지

출한다.

제8조(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재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 지원금
3.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제9조(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사업내용) ①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을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 문화행사 등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업내용, 회원 간 역할 분담 등은 자체 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③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입주민에 부담을 주는 행위, 기업체 등으로부터의 금전기부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사업내용이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의2(복수의 공동체 활성화단체에 대한 사업조정)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시행 등에 있어 복수의 공동체 활성화단체 간 갈등이 발생할 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비,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상시적인 이견조정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의결을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단체 간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10조(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사업비 사용) ①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사업비는 제1조 및 당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출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총액기준과 사업비 비율 기준을 동시에 고려 후 지출하여야 하는 금액을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 및 활동 지원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된 지출내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게시판, 관리비 부과내역서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주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감사) 입주자대표회의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모든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고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고하여 입주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연도)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3조(협의체계)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체 지원 이사, 관리주체와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부대복리시설 사용료 면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규정의 개정) ① 이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입주자등 20분의 1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등 2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 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제49조제1항 관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는 전라남도 ○○시(군) ○○동(읍,면) ○○번지 소재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관리대상물) 본 계약에서 위탁하는 관리대상물은 갑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별표 1의 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 ②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③ 영 별표 4에 따라 관리주체가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갑은 을이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

② 영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가 없는 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준수의무) 을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갑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사무인력: ○명
2. 기술인력: ○명
3. 경비인력: ○명
4. 청소인력: ○명
5. 기타인력: ○명

③ 을은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① 을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갑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 2. 관리사무소 등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3.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용료로 부과한다.

제7조(관리비예치금의 사용) ① 갑은 을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 관리비예치금의 사용을 승인한다.

② 을은 다른 주택관리업자 1인의 연대 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23조제1항, 영 제2조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② 지출하는 관리비등은 관계법령·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률을 감안하여 을의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책임범위 및 계약기간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을의 책임한계는 관계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갑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 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 3.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② 을은 제1항 각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배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 제14조제5항에 위반하여 을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갑이 진다.

제10조(면책사항) 을은 갑 또는 입주자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 2. 갑이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3. 갑 및 입주자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 4. 제3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및 손해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갑은 매월 마다 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을에게 지급

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을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을의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5.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장 업무감사 등

제14조 (업무감사) 제2조에 따라 갑과 을이 대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장은 갑의 감사로부터 자치관리 기구에 준하는 감사를 받는다.

1. 갑은 감사실시일 1주일 전에 을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 (갑의 승인사항) 을의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1. 예산(계약금액을 말한다)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추가경정예산(계약금액의 인상을 말한다)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관리사무소의 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표회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사항

제16조 (보고사항) 을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갑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비 부과 및 징수현황
2. 회계 연도 말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
4. 관계법령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및 시설물 안전진단 등
5. 기타 관리업무에 관한 특별한 사항 또는 중대한 사고

#### 제4장 보칙

제17조(준거사항)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② 본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8조(계약의 증명)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서 류

- 1. 갑의 공동주택관리규약 1부
- 2. 갑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수리한 공문서 사본 1부
- 3. 을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 4. 을의 사업자등록증 1부
- 5. 을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 6. 을의 인감증명서 1부
- 7. 을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부.
- 8.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의 현황 1 부
- 9.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주택관리사(보)의 손해배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년 월 일

갑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을 : ○○관리회사 대표이사 ○ ○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 본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시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7]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아래 어린이집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이하 “갑” 이라 한다)는 임차인 ○○○(어린이집 운영자를 말하며, 이하 “을” 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과 “을” 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 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갑

- 1) 성명: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홍길동(서명 또는 인)  
○○관리주식회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홍길갑(서명 또는 인)
- 2) 주소: (전화번호)

나. 을

- 1) 성명: 홍길순 (서명 또는 인)
- 2) 주소: (전화번호)
- 3) 생년월일:

2. 계약일: 20 년 월 일

3. 어린이집의 표시

- 가. 어린이집 소재지:
- 나. 어린이집 면적:

4. 계약조건

제1조 (목적)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보육이념을 실현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갑” 은 위 어린이집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 에게 임대한다.

② “을” 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갑” 에게 임대한다.

구 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금 액		
임대차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계약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
중도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잔 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③ “을“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지불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④ “을“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을“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는 “갑“이 고지한 고지서에 따라 내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4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및 부지의 대규모 개량이 필요한 때
2. 천재지변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3.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제5조(“을“의 금지행위)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의 경우,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어린이집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어린이집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5. 어린이집 내에 보육에 필요한 시설 외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6조(“을“의 의무) “을“은 위 어린이집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갑“의 의무) ① “갑“은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는 등 “을“이 해당 시설물을 계약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은 계약해지 시 “을“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와 관련하여 청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시설물의 안전 및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갑“에게 시설물의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갑“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8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받은 경우
2.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전대한 경우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어린이집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을”이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경우
7. “을”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인 경우
8.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갑”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을”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한 경우
2.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갑”이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갑”과 “을”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 ○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갑”이 “을”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할 임대료, 사용료 등 제반 납부금액 등 “을”의 채무를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어린이집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10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8]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제67조제1항 관련)

비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청 소 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3. 경 비 비	
4. 소 독 비	
5. 승강기유지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 ○층 이하제외(예시)
6. 난 방 비	·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7. 급 탕 비	· 세대별로 사용량(m <sup>3</sup> 당)에 1m <sup>3</sup> 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9. 수선유지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비고〉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9]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제68조제1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공 동 전 기 료	공용시설 전 기 료	· 공용시설인 중앙냉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를 제외한다.
	승 강 기 전 기 료	·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에 의하여 배분한다. · ○층 이하 저층에 거주하면서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세대에게 승강기 전기료 부과 시 타 세대와 균등하게 부과한다.
공동 수도료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별표 10]

사용료의 산정방법(제68조제2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대 전기료	전기료	·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KBS 수신료	·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세대 수도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단가 인정기준은 해당 수도공급자가 적용한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대 가스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역난방	난방비	·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오물수수료		·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 생활폐기물수수료		·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 이 규약 제59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이 규약 제41조에 의거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 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별표 11]

관리비 등의 연체료율(제73조 관련)

○ 입주자등이 준칙 제73조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관리비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연1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에 따라 연체료를 산정·부과한다.

1. 연12% 적용 [연체료 = 미납관리비 × 12% × 연체일수/365]  
 ※ (산출방법 예시) 300,000원 관리비가 5개월 10일(160일) 연체되었을 경우  
 · 300,000원 × 12% × (160/365) = 15,781원
2. <삭 제>

-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제소 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 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표 12]

###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시(군) ○○로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공동결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제7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3. 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및 법 제33조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의 실시
4.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에 따른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6. 단지 내 공용공간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

○○. 그 밖에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관리비등의 부담 및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배분) ① 법 제23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5항의 관리비등의 부담은 별표 1을 참조하여 정한다.

② 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배분은 별표 2를 참조하여 정한다.

제4조(공동대표회의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는 제5조에서 정

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분양 및 임대 세대수를 고려하여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한다

② 공동대표회의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과 구성원, 임차인대표회의의 임원과 구성원 및 임대사업자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명
2. 임차인대표회의: ○명
3. 임대사업자 임직원: 1명

③ 공동대표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장을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권한은 다른 공동대표회의 구성원의 권한과 다르지 아니하다.

④ 회장은 공동대표회의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대표회의 구성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공동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공동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② 공동대표회의는 필요시 그 구성원이 서로 협의하여 개최한다.

③ 공동대표회의에서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진행상황을 녹화 또는 녹음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혼합주택단지 입주자등과 임차인이 회의록, 녹화 또는 녹음물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준용)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아파트 임대주택관리규약을 준용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및 효력) 본 협약은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가 요청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서명 또는 인)

○○아파트 임대사업자 대표 ○○○ (서명 또는 인)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 (서명 또는 인)

※ 본 협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지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협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협약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내 업무 및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2 - 별표 1]

관리비등의 부담액 산정방법

1. 관리비 부담액 산정방법

비목	산정방법(분양주택단지 : 임대주택단지)
1. 일반관리비	· 관리면적 비율(〇〇:〇〇)에 따라 배분한다.
2. 청소비	· 관리면적 비율(〇〇:〇〇)에 따라 배분한다.
3. 경비비	· 관리면적 비율(〇〇:〇〇)에 따라 배분한다.
4. 소독비	· 관리면적 비율(〇〇:〇〇)에 따라 배분한다.
5. 승강기유지비	· 관리면적 비율(〇〇:〇〇)에 따라 배분한다.
6.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세대수 비율(〇〇:〇〇)에 따라 배분한다.
7. 난방비	·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으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 면적 비율(〇〇:〇〇)에 따라 배분한다.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8. 급탕비	·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공동대표회의에서 의결)를 곱하여 산정한다.
9. 수선유지비	· 관리면적 비율(〇〇:〇〇)에 따라 배분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 관리면적 비율(〇〇:〇〇)에 따라 배분한다.

2. 공동사용료 부담액 산정방법

비목	산정방법(분양주택단지 : 임대주택단지)
공동 전기료	1. 공동시설 전기료 ·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 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 비율(〇〇:〇〇)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 전기료를 제외한다.
	2. 승강기 전기료 ·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〇층 이상을 제외하고 세대수 비율(〇〇:〇〇)에 따라 배분한다.
3. 공동수도료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 비율(〇〇:〇〇)에 따라 배분한다.

[별표 12 - 별표 2]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 산정방법

비목	산정방법(분양주택단지 : 임대주택단지)
1. 중계기 설치 수입	·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 어린이집 임대료	·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3. 재활용품 판매 수입	·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4. 알뜰시장 수입	·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5. 광고판 수입	·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



[별지 제2호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사진 3×4cm
동 - 호	-	
성 명	(한글                   ) (한문                   )	
등록기준지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최종학력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직 장 명	직    위	
직장주소		
사 회 경 력  및  이 력	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p>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입후보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p>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li> <li>2.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 1부</li> <li>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li> <li>4.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li> <li>5.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li> <li>6.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li> <li>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li> <li>8.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li> </ol>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3호서식]

<b>위 임 장</b>		
선 거 구	제 선거구 입후보자	
위 임 인 (소유자)	성 명	
	소유세대	동 호
	실제거주(주소)	
	생년월일	-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성 명	(서명 / 날인)
	동 호	동 호
	생년월일	-
	위임인과의 관 계	
<p>위 본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에게 ○○ 아파트 ○○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하며, 대리인이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행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임인 : (서명 후 인감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b></p>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li> <li>-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li> <li>- 주택 소유자의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 1부</li> </ul>	
유의사항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 안전 제안서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비용추계서

5. 참고사항

가. 근거규정

나. 기 타

[별지 제5호서식]

### 재심의 요청서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심을 요청합니다.

1. 재심의 신청내용

가. 의결일자

나. 의결내용

2. 재심의 사유

가. 관계규정 위반 사항

나. 기타사항

3. 재심의 제안 내용

가. 의결주문사항

나. 비용추계서

다. 기타사항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귀하

별첨 : 입주자등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요청 시 재심의 요청자(동호수, 성명, 서명)

[별지 제6호서식]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1안)

회의명	회의의 정식명칭을 기재 예) 입주자대표회의 제○차 (정기, 임시)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가 개최된 일시와 장소를 기재 예) 일 시 : 2016. 1. 20. 18:00-22:00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참석자 · 배석자의 성명과 직위를 기재 예) 김회장(회장), 이감사(감사), ...
회의 진행순서	회의 개최부터 폐회까지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기재 예) 1. 개회 2. 국민의례 3. 회의안건 상정 및 토의 4. 폐회
상정안건	회의에 상정된 안건명을 순서대로 기재 1. ○○○ 2. △△△ 3. □□□
발언내용	상정 안건 관련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 ○ 발언자 성명(직위) - 발언 내용 ○ 발언자 성명 - 주요발언 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기재, 표결이 있는 경우 표결 결과도 함께 기재 ○ 결정사항 - ○○○안건에 대하여 ○○○ 으로 결정함 ○ 표결내용 - ○○○안건에 대하여 찬성 ○, 반대 ○, 기권 ○ 으로 가결됨
비 고	그 밖에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2안)

<p>○ 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p>							
<p>회의록 작성자 : 관리소장 ○ ○ ○</p>							
회의 구분	정기회의				총정원	10명	
회의 일시	201○년 ○월 일(수요일) 18:00~22:00				미선출	1명	
					의결정족수	9명	
회의 장소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				참석	7명	
					불참	2명	
<p>[회의안건]</p> <p>1. 개회선언</p> <p>2. 국민의례</p> <p>3. 안건상정 및 토의</p> <p>4. 폐회</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201○ . .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b></p>							
<p>입주자대표회의 출석을 확인하고 참석위원 서명(또는 날인)한다.</p>							
동	직책	성명	서명	동	직책	성명	서명





안전세부내역

1. 1월재무제표 승인 및 관리비 부과건

별첨 참조

2. 명절선물지급건

1. 명절선물지급대상 : 관리사무소 직원 6 명

미회원 3 명

경비 6 명

2. 지급액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비 고
	1인당 지급액	소 계	1인당 지급액	소 계	
관리소장	8		10		
관리과장	5		6		
기전실(2명)	5		6		
경리과장	5		6		
경리주임	5		6		
미회원(3명)	5		6		
경비(6명)	5		6		
소 계					

3. 용역업체 선정(계단청소/소독/저수조 청소)

구 분	계단청소		소 독		저수조 청소		합 계
	월	세대당	월	세대당	회	세대당	
○○위생							
(주)○○○○							
(주)□□□□							
현계약내용 (○○위생)							

4.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일정

1안 : 매월 셋째주 화요일

2안 : 매월 셋째주 수요일

3안 :

[별지 제7호서식]

#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에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8호서식]

#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아파트의 제○기 동별 대표자로  
제○ 선거구에서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  
니다.

년 월 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9호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표준 입찰 내역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m <sup>2</sup> 당 단가	월간금액	비고
1. 행정, 인사, 노무, 법률관련 업무 지원비(행정, 인사, 노무, 법률)	관리단지 행정, 인사, 노무, 법률 업무지원 ·처리			
2. 회계 관련 업무지원비(회계)	관리단지 회계 지도·점검 등 사무업무지 원 및 회계 감독			
3. 기술 업무지원비 (건축, 시설)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 및 장비지원 등 업무관리			
4. 교육업무	관리업무에 관한 교육지원			
5. 일반관리비	관리지원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기업이윤	관리지원에 필요한 기타 기업이윤 등			
7. 기타경비	관리지원에 필요한 기타 부대비용 등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 평균액의 합계액		원/월	
m <sup>2</sup> 당 단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원) ÷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원(m <sup>2</sup> 당)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원) × 개월		원	

※ 유의사항

- 내역서의 금액 기재란 각 항목 중 단가에 “무표시” 또는 “0” 원, “1원미만”,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는 경우 해당 입찰 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금액은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입찰서 기재 금액과 일치해야 함.
- 각 항목별 m<sup>2</sup>당 단가 1원미만의 금액은 배제함.

20    년    월    일

위 본인(입찰자) :

(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10호서식]

경비·청소·소독 등 용역사업자 선정 시 표준 입찰 내역서

구 분	인 원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직접노무비				1.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반영 2. 근무시간 명시 3. 제수당 및 퇴직금 포함
간접노무비				1. 4대보험 2. 피복장구비 및 교육훈련비
재 료 비				월간 재료비 상세내역
기타경비				월간 기타경비 상세내역
일반관리비				직,간접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기업이윤 법인세등				직,간접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월간합계				월간 용역비 합계
입찰금액				월간 수수료 × 용역기간

[별지 제1호서식]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제2호 및 관리규약 제47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주택관리업자 관리서비스 만족도 평가항목” 을 참고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재계약 동의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관리규약 제53조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가. 주택관리업자 상호:
- 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 다. 재계약 기간:
- 라. 재계약 내용:
- 마. 주요 실적 및 지적사례 : 해당단지과 관련한 공동주택법령 위반 사례(○건), 지자체 감사 시 주요 위반사례(○건), 외부 회계감사 시 주요 지적사례(○건), 우수 관리사례(○건) 등

<input type="checkbox"/> 고객응대서비스				
관리사무소 방문 시 직원의 고객응대 등 전반적인 직원 친절서비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민원처리 해결의지 및 신속도				
관리비 등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에 대하여 문의할 때 직원의 답변 및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관리업무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서비스				
1. 관리비 등(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포함)의 집행과 관련하여 객관성, 투명성				
2.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안건, 회의결과 등 입주자들에게 공지 상황				
3. 단지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부착한 안내문의 내용 및 위치의 적정성				
4. 각종 공사나 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				
<input type="checkbox"/> 시설물유지 및 관리서비스				
1. 공용부분 시설물(승강기, 소방시설, 전기설비 등에 대한 파손 및 고장 시 조치				
2. 편의시설(주차장, 쉼터,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이용편의				
<input type="checkbox"/> 주거환경 및 복지향상 등 서비스				
1. 거주하시는 단지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또는 일반쓰레기 처리실태				
2. 입주자등의 주거복지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3. 층간소음 등 입주민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만족도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동의		부동의	
사유				
(동호수)	성명 :			(서명)

※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부동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계약 할 수 있음  
 ※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부동의)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 할 수 있음

20 년 월 일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별지 제12호서식]

사업수행 실적 평가 집계표	
법적근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제9호
평가대상 사업자	○○용역회사(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 재활용품수거 등)
계약기간	당 초
	2013. 2. 1. ~ 2015. 1. 31.(24개월)
계약금액	재 계 약
	2015. 2. 1. ~ 2017. 1. 31.(24개월)
계약금액	당 초
	총계약금액                      원 (                      원/월)
계약금액	재 계 약
	총계약금액                      원 (                      원/월)
평가방법	<p>평가주체는 평가위원을 모집하여 계약기간 만료일 45일 전까지 평가항목별로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0점이상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점수를 말한다.</p>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가점수에 미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li> <li>2.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등록기준미달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재계약 할 수 없다.</li> </ol>
평가결과	○○점
평가위원	위 내용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소속 (관리사무소장)    성명                      (서명) 평가위원 소속 (동별대표자)    성명                      (서명) 평가위원 소속 (입주민)    성명                      (서명)











[별지 제13호서식]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 A-,BBB+,BBB°,B BB-,BB+,BB°	A1,A2+,A2°,A 2-,A3+,A3°,A 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15	2건 이하/10,000세대						
		12	2건 초과-4건 이하/10,000세대						
		9	4건 초과-6건 이하/10,000세대						
		6	6건 초과-8건 이하/10,000세대						
		3	8건 초과/10,000세대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5개 단지 이상						
		7	4 ~ 3개 단지						
		4	2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모두 확보하지 않는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아파트 평가위원                      동            호            성명                      서명(본인 이름 자필)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2	2 ~ 3건						
		9	4 ~ 5건						
		6	6 ~ 7건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모두 확보하지 않는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아파트 평가위원

동

호

성명

서명(본인 이름 자필)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 A-,BBB+,BBB°,B BB-,BB+,BB°	A1,A2+,A2°, A2-,A3+,A3°, 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2	2 ~ 3건						
		9	4 ~ 5건						
		6	6 ~ 7건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모두 확보하지 않는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아파트 평가위원

동

호

성명

서명(본인 이름 자필)

[별지 제14호서식]

정보공개요청서

신 청 인	성 명:	
	동·호수:	연락처:
정보공개 요청내용		
공개방법	열람 [ ], 열람요청시간:   년   월   일   시 복사 [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사 요청 시 복사비용은 관리규약 제5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복사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본을 교부합니다.</li> <li>□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합니다.</li> </ul>	
상기와 같이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지명:
- 주 소
- 세대수:
- 기준일: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율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사 용 액 (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	잔 액 (②-③)	적립필요액 (①-②)
내 용					
산정방법	○ 매월 적립금액 :            원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분양면적) m <sup>2</sup> 당   원 × 총 주택공급면적   m <sup>2</sup>				
계획서	○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 ○ 장기수선계획 조정일 :				
<p>20    년    월    일</p> <p>○○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인)</p>					

[별지 제16호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구분		내역	비고
1.공사의 명칭		옥상 방수 및 외벽 크랙 보수공사 (수선대상 공사의 명칭을 기재)	부분수선
2. 공사내용	공사개요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수선주기가 도래하였고 누수신고 접수된 세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결과 보수가 필요한 옥상부분 방수 및 외벽 크랙 보수 공사 (수선대상 공사의 장기수선계획 상 수선주기 및 수선을 등을 기술하고 공사시행 시점의 경과기간 및 공사시행 사유 등을 기술)	누수접수 세대에 한정함
	공사위치	누수 접수 세대 : 38세대 (공사발주후 준공전까지 추가 접수세대는 현장조사후 추가 공사하고 공사비 정산) (수선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를 기술)	세부내용 별첨
3. 설계도면 등		옥상평면도, 외부 크랙 위치도 및 시방서 별첨 (수선공사의 설계도 등 필요서류를 첨부)	
4. 공사기간		20**년 3월 ~ 4월(우기전 공사완료) (공사 예정기간을 기재)	변경가능
5. 공사예정금액		금일천오백만원 (₩15,000,000)이내 (거래 사례가격 또는 예비견적을 받아서 금액을 기재)	
6. 공사발주방법 및 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	

구분	회장	감사(6동)	감사(4동)	이사(2동)	이사(7동)	1동대표	3동대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서명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20 년 월 일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인)

[별지 제17호서식]

잡수입 수납현황 및 사용내역

<p>○ 단지명:</p> <p>○ 대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p>					
<b>1. 수납절차</b>					
<p>가. 내부승인절차(예시)</p> <p>○ 대 상</p> <p style="margin-left: 20px;">- 광고, 승강기사용, 주차, 부대시설운영(알뜰장등), 재활용매각, 기타</p> <p>○ 승인절차</p> <p>① 게시판광고 접수: 부녀회 총무 ⇒ 접수대장에 기재 및 접수증 교부</p> <p>② 게시판광고료 납부: 관리사무소 경리 ⇒ 게시판광고료를 수납하고 접수증에 수납확인인 날인</p> <p>③ 게시판광고 스티커 배부: 부녀회 총무 ⇒ 수납확인인이 날인된 접수증을 확인하고 게시판광고 스티커를 배부하고 배부된 스티커의 일련번호를 접수대장에 기재</p> <p>④ 불법 게시판광고 단속: 경비원 ⇒ 단지를 순찰하여 게시판광고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게시판광고물을 철거</p> <p>⑤ 정정보고: 관리소장보고 ⇒ 입주자대표회의 인건상정 ⇒ 의결(승인)</p> <p>나. 내부문서보존절차: 보관주체, 보존기간 등</p>					
<b>2. 수납현황</b>					
수납원	당기수납건수	전기수납건수	당기수납총액	전기수납총액	비 고
<b>3. 수입내역</b>					
연월일	항 목	금 액	비 고		
<b>4. 사용내역</b>					
연월일	항 목	금 액	비 고		

[별지 제18호서식]

잡수입 수납영수증

<p>NO. 000001                  항목: ○○○사용원부                  (예시 :광고,승강기,알뜰장,주차장, 재활용품매각 등)                  주소 동 호                  성명:                  금액 ₩ (            원)                  위와 같이 ○○○를 고지함.                                    년 월 일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p>	<p>NO. 000001                  항목: ○○○납부확인서                  (예시 :광고,승강기,알뜰장,주차장, 재활용품매각 등)                  주소 동 호                  성명:                  금액 ₩ (            원)                  위와 같이○○○ 납부확인함.                                    년 월 일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p>	<p>NO. 000001                  항목: ○○○지시서                  (예시 :광고,승강기,알뜰장,주차장, 재활용품매각 등)                  주소 동 호                  성명:                  금액 ₩ (            원)                  위와 같이○○○ 를 승인함.                                    년 월 일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p>	<p>NO. 000001                  항목: ○○○영수증                  (예시 :광고,승강기,알뜰장,주차장, 재활용품매각 등)                  주소 동 호                  성명:                  금액 ₩ (            원)                  위와 같이 ○○○를 영수함.                                    년 월 일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p>
--	---	---	---

[별지 제19호서식]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한 규약 내용				
도 준칙안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변경(개정)사유	비고
	개정(전)	개정(안)		

전라남도 고시 제2023-212호

2022년 해남 남동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7차) 고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중인 2022년 해남 남동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해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계획 승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3. 6. 1.

전라남도지사

- 1. 사업의 명칭: 해남 남동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2.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 3. 사업목적 및 개요

- 가. 목적: 노후 수리시설물 개보수로 사전 재해예방 및 안정 영농기반 구축
- 나. 사업개요

지구명	위 치			사업량 (개소)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시 행 자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총괄	'22년			
남동	해남	황산	연당	○ 남동저수지 - 제방덧쌓기, 사석보강 - 여·방수로 물넘이 재설치 - 취수시설 보수 등	4,782	90	'23. 5. ~ ' 25. 12.	해남·완도지사장	
		화산	석호	○ 대인저수지 - 제방덧쌓기, 사석보강 - 여·방수로 물넘이 재설치 - 취수시설 보수 등					
		문내	고평	○ 고평저수지 - 제방 그라우팅 - 투우드레인 설치 - 방수로 재설치 등					

- 4. 시행계획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해남·완도지사 ☎ 061-530-1533)

5. 지구별 수용

지구명	사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총면적 (㎡)	편입예정 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소유자
남동	소계			64필지		134,815	17,269		
	해남	황산	부곡	65-2	제	136	105	해남군 황산면 부곡리 145	정한조
	해남	황산	부곡	65-6	도	17	17	해남군 황산면 부곡리 145	정한조

지구명	사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총면적 (㎡)	편입예정 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소유자
남동	해남	황산	부곡	67-2	제	344	339		국(농림부)
	해남	황산	부곡	67-1	답	2,293	45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촌공사
	해남	황산	부곡	68-2	제	76	76		국(농림부)
	해남	황산	부곡	68-1	유	1,286	145		국(농림부)
	해남	황산	부곡	69-2	제	172	172		국(농림부)
	해남	황산	부곡	953	구	1,697	748		국(농림부)
	해남	황산	부곡	69-1	유	1,904	193		국(농림부)
	해남	황산	부곡	71-2	제	334	327		국(농림부)
	해남	황산	부곡	71-1	유	522	302		국(농림부)
	해남	황산	연당	651-7	제	10	10		국(농림부)
	해남	황산	연당	72-2	제	155	155		국(농림부)
	해남	황산	연당	72-1	유	26	26		국(농림부)
	해남	황산	연당	73-2	제	215	215		국(농림부)
	해남	황산	연당	73-1	임	86	86		국(기획재정부)
	해남	황산	연당	651-5	제	185	185		국(농림부)
	해남	황산	연당	791	구	2,496	469		국(농림부)
	해남	황산	연당	651-4	유	25,431	1,718		국(농림부)
	해남	황산	연당	730-1	답	2,650	263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시등로 97-34	박병삼
	해남	황산	연당	790	도	1,037	118		국(농림부)
	해남	황산	연당	695-4	제	1,008	1,008		국(농림부)
	해남	황산	연당	674-5	답	664	159		국(기획재정부)
	해남	황산	연당	645-3	임	8,809	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해남	황산	연당	674-4	제	360	7		국(농림부)
	해남	황산	연당	695-87	구	44	44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촌공사
	해남	황산	연당	649-3	유	2,033	695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촌공사
	해남	황산	연당	657-2	제	126	3		국(농림부)
	해남	황산	연당	649-2	제	86	1		국(농림부)
	해남	황산	연당	695-2	구	2,952	377		국(건설교통부)
	해남	황산	연당	695-86	구	257	1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촌공사
	해남	황산	연당	650-3	유	721	366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촌공사
해남	황산	연당	651-3	제	430	422		국(농림부)	
해남	황산	연당	652-2	구	228	38		국(농림부)	

지구명	사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총면적 (㎡)	편입예정 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소유자
남동	해남	황산	연당	650-2	제	281	81		국(농림부)
	해남	황산	연당	651-1	답	13	10		국(기획재정부)
	해남	황산	연당	652-4	구	1,083	4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촌공사
	해남	황산	연당	710-5	답	3,067	28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86-4 거평빌라 306	박충식
	해남	화산	석호	944-3	답	2,659	46	해남군 현산면 백포리 372	해남윤씨지운공파문중
	해남	화산	석호	943-7	구	694	8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해남	화산	석호	908-1	구	238	7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해남	화산	석호	1078-5	도	3,753	61		국(건설교통부)
	해남	화산	석호	911-1	유	456	164		국(농림부)
	해남	화산	석호	1192	구	1,111	101		국(농림수신부)
	해남	화산	석호	908-3	구	79	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해남	화산	석호	908	답	893	47	해남군 화산면 석호리 267	전중석
	해남	화산	석호	905-1	유	648	404		김준계
	해남	화산	석호	911	유	476	158		국(기획재정부)
	해남	화산	석호	944-5	답	1,964	266	해남군 화산면 석호리 955	김행자
	해남	화산	석호	909-3	구	86	6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해남	화산	석호	910	답	86	86	해남군 화산면 석호리 267	전중석
	해남	화산	석호	906	유	2,009	1,09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해남	화산	석호	1193	도	933	269		국(농림수신부)
	해남	화산	석호	910-1	유	1,716	360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해남	화산	석호	1194	구	1,757	540		국(농림수신부)
	해남	화산	석호	941-5	유	6,652	2,17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해남	화산	석호	925	답	179	71	해남군 화산면 석호리 267	전남주
	해남	화산	석호	926	전	337	85	해남군 화산면 석호리 267	전남주
	해남	화산	석호	1078-3	도	7,314	47		국(건설교통부)
	해남	화산	석호	926-1	유	483	10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해남	화산	석호	354-1	유	1,335	2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해남	화산	석호	940-1	유	56	2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해남	화산	석호	940	유	1,220	1,220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136, 1901동 801호(상동,꿈동산)	김은혜 외 1인
	해남	문내	고평	430-1	구	34,583	434		농림부

전라남도 고시 제2023-226호

### 산림사업법인 등록 취소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6. 1.

#### 전라남도지사

법 인 명	대표자	산림사업의 종 류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 취소일자	등록취소 사 유
주식회사 건승	오*종 홍*진	자연휴양림 등 조성	전남2017-014	전남 화순군	' 23. 5.24 .	폐업

전라남도 고시 제2023-227호

##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고시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3. 6. 1.

### 전라남도지사

1.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 다음 조서
2.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 도면: 게재 생략
3.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대로	1	20	35	보조 간선 도로	209	대로1-7 화치동 1473제	항만구역 구역계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대로 1-20	· 신설 L=209m, B=35m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사업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로) 신설

전라남도 고시 제2023-228호

강진 덕서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강진 덕서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6. 1.

전라남도지사

- 1. 사업명 : 강진 덕서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가. 사업목적 : 평야부 우량농지 중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시설계량 등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
  - 나. 사업개요(변경)
    - 위 치 :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덕서리 일원
    - 수역면적 : 101.0ha
    - 총사업비 : 2,593,000천원(도비 2,229,980, 군비 363,020)
    - 사업기간
      - (당초) 2022. 2. 9. ~ 2023. 12. 20.
      - (변경) 2022. 2. 9. ~ 2024. 6. 30.
    - 사업내용
      - (당초) 용수로 13조 L= 5,024m, 배수로 4조 L= 952m(0.8\*0.8~1.0\*1.0)
      - (변경) 용수로 13조 L= 5,024m, 배수로 4조 L= 960m(1.0\*1.0~1.5\*1.2)
- 3. 변경사유 : 물가변동 조정금액 반영, 현장여건 고려 배수로 규격 변경
- 4. 사업효과 : 농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영농환경 개선 및 농업 경쟁력 제고
- 5. 사업시행자 : 강진군
- 6. 기타 관련서류 열람장소 : 강진군 건설과(061-430-339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및 지장물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권리자	
	시군	면	리	번지				주소	성명
계						23,450	1,359		
1	강진	도암	덕서	503-1	답	2,377	51	인천 계양구 병방동 432-3, 127-15-5	임종식
2	강진	도암	덕서	676-13	임	711	202	전남 강진군 도암면 덕서리 산87-1	안산김씨대소 치종중
3	강진	도암	덕서	676-7	임	3,259	1,045	전남 강진군 도암면 덕서리 산87-1	안산김씨대소 치종중
4	강진	도암	덕서	123-6	도	86	20	전남 순천시 호현1길 26, 302동 1404호	임종권
5	강진	도암	덕서	134-1	임	16,984	8	전남 강진군 도암면 덕서리 307	선산임씨광자 민종중
6	강진	도암	덕서	116-2	도	33	33	전남 강진군 도암면 덕서리 317	임문규

위 치 도



전라남도 고시 제2023-22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6. 1.

전라남도지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m)
변경	지방도	840호선	곡성 입면지구	전남 곡성군 입면 서봉리	17,153	입면 서봉리 671-2	입면 서봉리 143-1	입면 서봉리	94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방도 840호선 곡성 입면지구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변경 조서

○ 도로결정(변경) 조서 : 소로 2-69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9	8	국지 도로	11,852	입면 매월리 801-6도	곡성읍 신기리 산188-2도	일반 도로			
변경	소로	2	69	9.5	국지 도로	11,842	입면 매월리 801-6도	곡성읍 신기리 산188-2도	일반 도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 11. 10. ~ 2024.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다음

6 지형도면 : 1/5,000 도면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열람장소 :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 (☎ 061-286-0972)

곡성군 안전건설과 (☎ 061-360-862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리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서봉	671-2	도	132	25	곡성군	공				
2	〃	671-3	도	186	44	곡성군	공				
3	〃	847	도	2,920	156	국토교통부	국				
4	〃	199-2	도	46	46	곡성군	공				
5	〃	199-3	도	64	64	곡성군	공				
6	〃	198-2	도	165	165	곡성군	공				
7	〃	198-3	도	201	201	곡성군	공				
8	〃	676-2	도	169	169	곡성군	공				
9	〃	676-3	도	57	57	곡성군	공				
10	〃	197-2	도	202	202	곡성군	공				
11	〃	197-6	도	19	19	곡성군	공				
12	〃	196-2	도	337	306	곡성군	공				
13	〃	196-1	도	47	47	곡성군	공				
14	〃	207-2	도	4	4	곡성군	공				
15	〃	196-4	도	22	22	곡성군	공				
16	〃	197-5	도	4	4	곡성군	공				
17	〃	187-3	도	2	2	허성팔	입면 서봉리 335				
18	〃	187-4	도	32	32	곡성군	공				
19	서봉	195-2	도	635	28	곡성군	공유지				
20	〃	187-2	도	162	14	곡성군	공유지				
21	〃	920	도	494	162	농림축산식품부	국				
22	〃	917	구	2,115	66	농림축산식품부	국				
23	〃	905-11	답	2,674	1,973	정삼호	입면 서봉리 303				
24	〃	918	구	694	139	농림축산식품부	국				
25	〃	919	도	1,179	125	농림축산식품부	국				
26	〃	906-13	답	1,489	827	양준모	입면 민수리 458				
27	〃	906-12	답	1,497	199	최진호 외 1인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20, 109동 1603호 (문흥동, 문흥상록아파트)				추가 (11㎡)
28	〃	906-16	구	147	138	곡성군	공				
29	〃	845-2	도	92	3	국토교통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리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0	〃	241-8	도	18	18	곡성군	공				
31	〃	241-3	도	188	26	곡성군	공				
32	〃	242-5	도	17	17	곡성군	공				
33	〃	242-2	도	96	10	곡성군	공				
34	〃	845	도	127	39	국토교통부	국				
35	〃	244-4	도	66	66	곡성군	공				
36	〃	244-3	도	117	117	곡성군	공				
37		244-1	도	83	37	양준모	시정				
38	서봉	906-15	구	13	13	곡성군	공				
39	〃	243-2	도	218	4	곡성군	공				
40	〃	253-3	도	11	11	곡성군	공				
41	〃	253-2	도	3	3	곡성군	공				
42	〃	834-2	구	619	66	농림수산부	국				
43	〃	844	도	2,116	1,543	국토교통부	국				
44	〃	921	구	1,905	96	농림축산식품부	국				추가 (15㎡)
45	〃	255-3	전	643	28	성영탁	입면 서봉리 366				
46	〃	255-6	도	127	127	곡성군	공				
47	〃	255-2	도	707	668	곡성군	공				
48	〃	255-4	도	5	5	곡성군	공				
49	〃	256-3	도	56	56	곡성군	공				
50	〃	256-5	도	487	487	곡성군	공				
51	〃	256-6	도	123	123	곡성군	공				
52	〃	256-4	임	530	197	서길종	서울특별시 종량구 망우동 524-32				
53	〃	257	전	2,291	437	강신갑	담양군 고서면 동운리 1300				
54	〃	256-1	도	255	255	곡성군	공				
55	〃	257-1	도	2	2	강신갑	담양군 고서면 동운리 1300				
56	〃	925	도	5,878	31	농림축산식품부	국				
57	서봉	174-2	도	522	522	곡성군	공				
58	〃	174-3	전	1,019	33	김점순	입면 서봉리 435				
59	〃	174-5	도	9	9	곡성군	공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리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60	〃	174-4	도	210	210	곡성군	공				
61	〃	산33-2	도	134	82	곡성군	공				
62	〃	173-3	도	433	414	곡성군	공				
63	〃	173-4	도	332	332	곡성군	공				
64	〃	171-2	도	400	293	곡성군	공				
65	〃	171-3	도	363	363	곡성군	공				
66	〃	170	도	149	86	곡성군	공				
67	〃	169-1	도	231	174	곡성군	공				
68	〃	169-2	도	258	258	곡성군	공				
69	〃	산33	임	27,841	269	경주최씨총렬공 피종중	입면 서봉리 337				
70	〃	산33-1	도	200	100	곡성군	공				
71	〃	142-2	도	433	433	곡성군	공				
72	〃	142-4	도	81	81	곡성군	공				
73	〃	142-6	도	59	59	곡성군	공				
74	〃	837	도	1,474	215	국토교통부	국				
75	〃	838	도	228	228	국토교통부	국				
76	서봉	143-2	도	102	102	곡성군	공				
77	〃	143-3	도	118	118	곡성군	공				
78	〃	143-4	도	17	17	곡성군	공				
79	〃	143-1	전	90	62	최재수 외 2인	입면 서봉리 337				
80	〃	산24	임	33,936	470	김종중 외 2인	입면 매월리 24				
81	〃	산24-2	도	893	294	건설부	국				
82	〃	산24-4	도	279	277	곡성군	공				
83	제월	1312	도	182	48	국토교통부	국				
84	〃	1239-2	도	681	142	곡성군	공				
85	서봉	197-4	도	25	25	곡성군	공				
86	〃	197-7	도	8	8	곡성군	공				
87	〃	196-3	도	10	10	곡성군	공				
88	〃	254-1	도	261	261	곡성군	공				
89	〃	175-3	도	76	76	곡성군	공				
90	〃	175-4	도	27	27	곡성군	공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리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91	ㄱ	175-2	도	10	10	곡성군	공				
92	ㄱ	843-63	도	8	8	전라남도	공				
93	ㄱ	843-62	도	318	318	전라남도	공				
94	ㄱ	843-35	도	46	46	전라남도	공				
95	서봉	843-34	도	7	7	전라남도	공				
96	ㄱ	843-33	도	3	3	전라남도	공				
97	ㄱ	843-61	도	17	17	전라남도	공				
98	ㄱ	142-3	도	45	45	곡성군	공				
99	ㄱ	142-5	도	24	24	곡성군	공				
100	ㄱ	144-4	도	99	99	곡성군	공				
101	ㄱ	144-3	도	95	95	곡성군	공				
102	ㄱ	144-1	도	192	192	곡성군	공				
103	ㄱ	843-1	천	61,462	466	국토교통부	국				
104	ㄱ	906-11	답	1,589	4	김해식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39길63-39, 301호 (등촌동)				신규 (4㎡)
계				165,895	17,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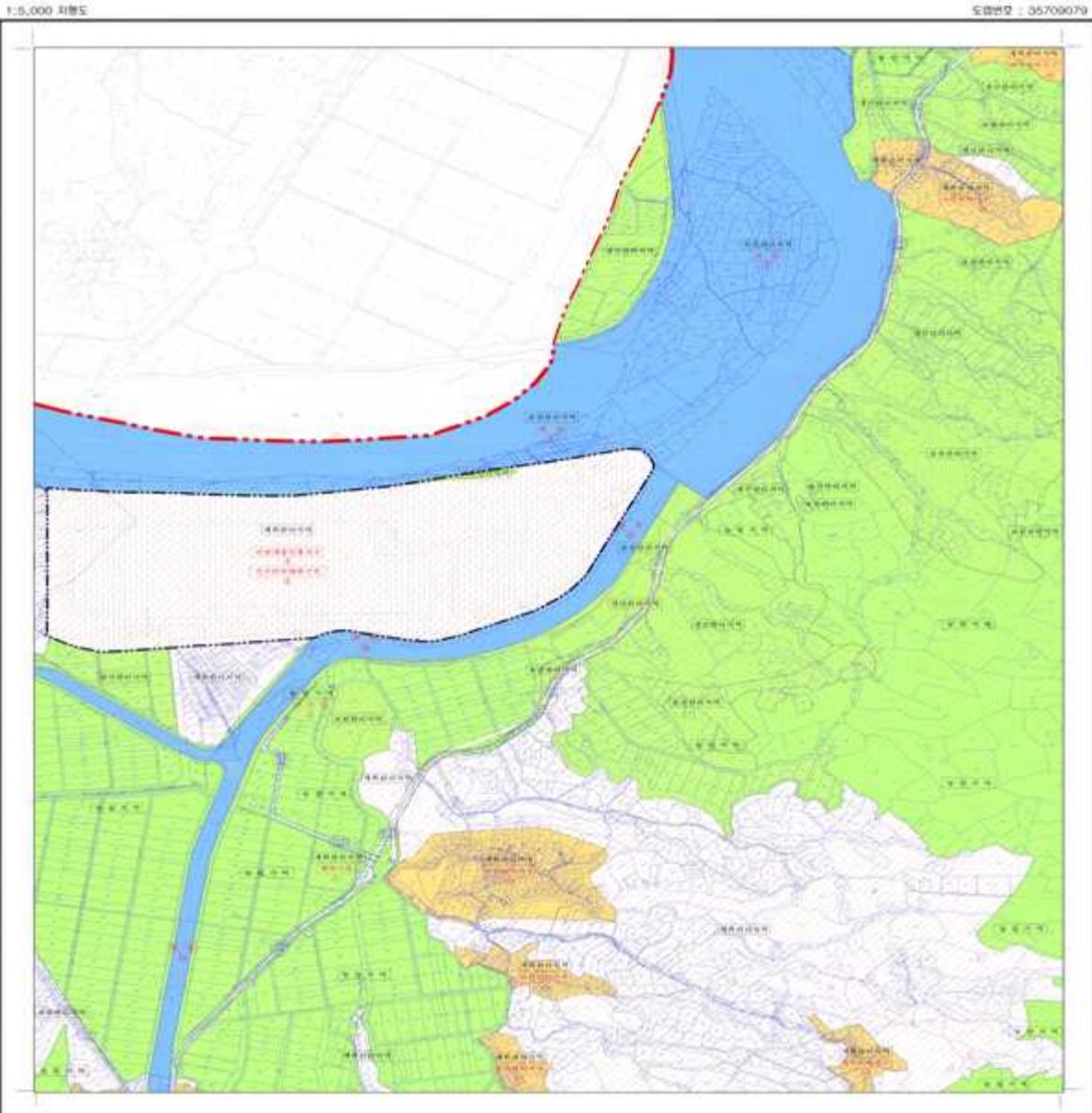
위치도



지방도 840호선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위 치 :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서봉리 일원

곡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승인고시도



Scale: 1:5,000

Legend:

- 1. 지방도 840호선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2. 기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3. 기존 도로구역결정(변경)도
- 4. 기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5. 기존 도로구역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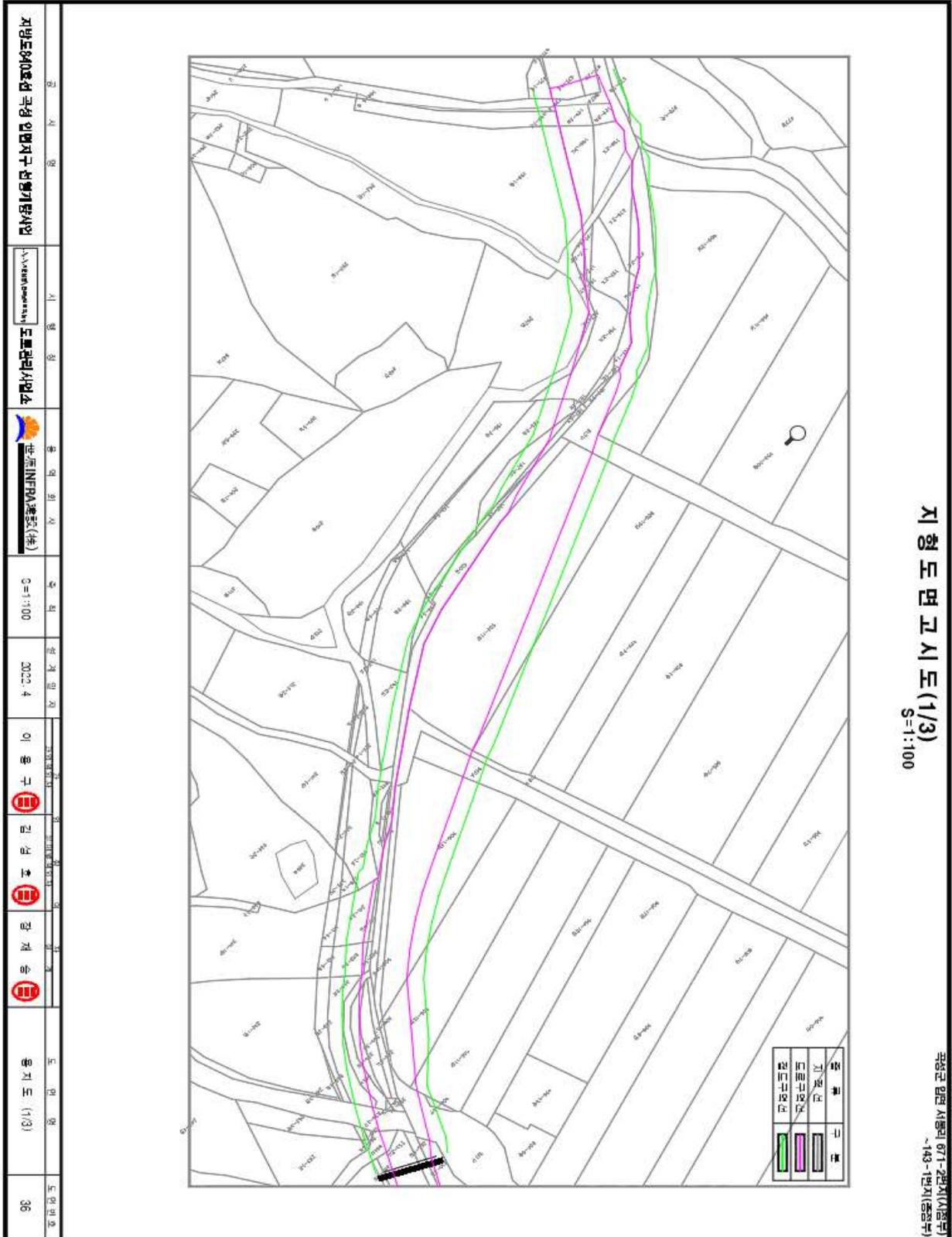
Map details and location information:

곡성군 입면 서봉리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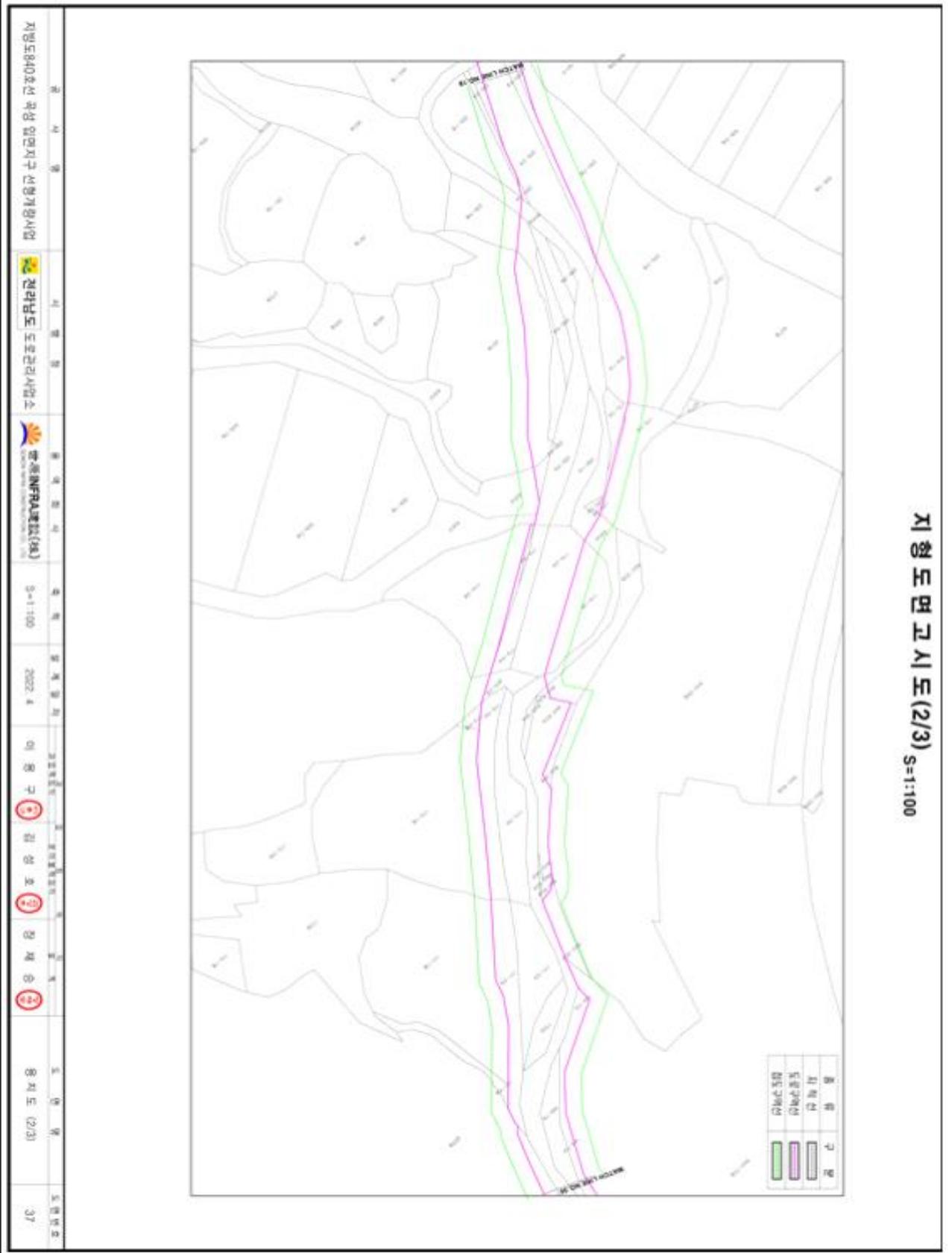
도보번호 : 35709079

지방도 840호선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 위 치 :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서봉리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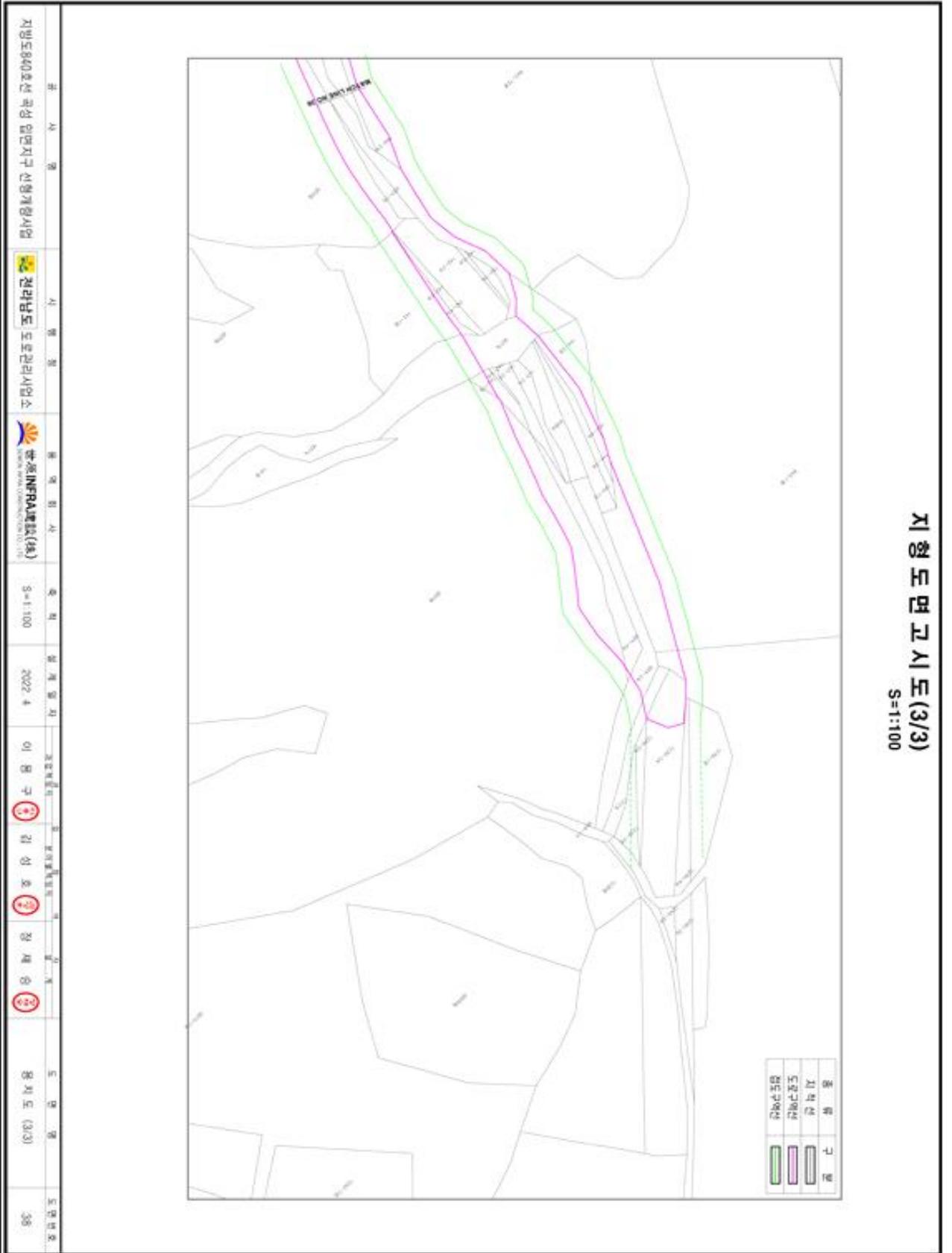


■ 위 치 :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서봉리 일원



지형도면고지도 곡성 입면지구 선형개량사업  
 전남도도보관리사업소  
 9-1:100  
 2022. 4  
 이종구  
 김성호  
 강재승  
 도면번호 37

■ 위 치 :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서봉리 일원



전라남도 고시 제2023-230호

###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6. 1.

#### 전라남도지사

1. 도로의 지정 : 지방도
2. 노 선 명 : 840호선(곡성 입면지구)
3. 접도구역 또는 위치
  - 전라남도 고시 제2023-229호(2023. 6. 1.)에 의한 도로경계선 또는 구역경계선(도로부지) 으로부터 양측 각 5m까지
4.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지정
  - 도로구조물의 손괴 방지
  - 도로변의 미관보존 및 도로교통의 위험방지
5. 관계도면 열람장소
  - 접도구역 지정 도면 및 관계도면은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 곡성군 안전건설과에서 관계인에게 공람합니다.

전라남도 고시 제2023-232호

덕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덕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전라남도 농업정책과-9014, 2023. 5. 24.)하고 고시합니다.

2023. 6. 1.

전라남도지사

1. 사업명: 덕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2.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3. 사업목적 및 개요
  - 목적: 농경지 침수예방 및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사업개요
    - 위치: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덕곡리, 안평리, 정석리 일원
    - 수혜면적: 15.2ha
    - 총사업비: 1,300백만원(도비 80%, 군비 20%)
    - 사업기간: 2023. 1. ~ 2024. 12.(2개년)
    - 주요사업
      - 배수로: 확장정비 2조 637m
      - 매립: 매립 A=0.76ha (V=1,613.4m<sup>3</sup>)
4. 관계도서 비치: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농어촌사업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061-380-4138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및 지장물 조서: 해당없음

전라남도 고시 제2023-234호

2023년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시군) 시행계획 승인(2차) 고시

2023년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시군) 대해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6. 1.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2023년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시군)
2. 사업의 목적: 수로 내 수초, 퇴적토 등의 정비 불량과 단면 부족으로 인해 침수피해를 유발하는 흙수로를 구조물화
3. 사업의 내용: 흙수로 구조물화(개거, 수로관 설치 등)

지구명	위 치			사업량(m)	사업비(천 원)			사업기간 (예 정)	사 업 시행자	비고
	사군	읍·면	리동		합계	도비	시군비			
해남(10지구)				1,574	525,000	420,000	105,000	' 23.6. ~ ' 23. 11.	해남군수	
남천	해남	해남	남천	210	65,000	52,000	13,000			
풍혈	해남	화산	관동	58	19,790	15,832	3,958			
미야	해남	송지	미야	149	52,100	41,680	10,420			
군곡	해남	송지	군곡	65	30,000	24,000	6,000			
통호	해남	송지	통호	100	49,600	39,680	9,920			
방산	해남	북일	방산	230	63,310	50,648	12,662			
흑천	해남	옥천	흑천	185	65,000	52,000	13,000			
송석	해남	마산	송석	242	55,300	44,240	11,060			
관춘	해남	황산	관춘	220	65,000	52,000	13,000			
월호	해남	화원	월호	115	59,900	47,920	11,980			

4. 사업의 효과: 흙수로 구조물화를 통한 영농환경 개선 및 농업생산성 향상
5. 관련 서류 열람 장소: 해남군청 건설도시과 농업용수팀(☎061-530-5831)

전라남도 공고 제2023-609호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우리 도의 재난관리기금 및 집행현황을 알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실태를 공고합니다.

2023. 6. 1.

전라남도지사

I.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가.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당해 연도 확보 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16,494백만원	16,494백만원	100%

나. 누적 기준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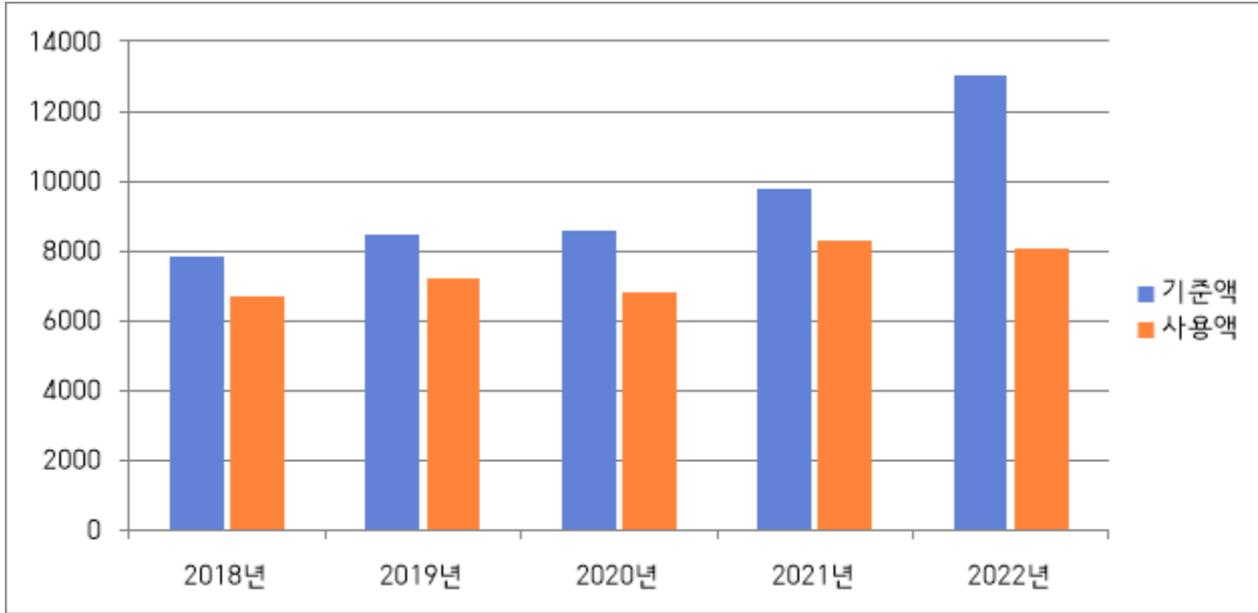
누적 확보 기준액(①)	누적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111,596백만원	111,969백만원	100%

II. 재난관리기금 집행 현황

가.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확보액(당해연도)		7,853	8,485	8,560	9,769	13,054	
사 용 액	합 계	6,675	7,212	6,781	8,303	8,069	
	공공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	-	-	-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6,675	7,212	6,781	8,303	8,069
	민간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	-	-	-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	-	-	-	-	



☞ 구체적 내용설명

-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 및 코로나 대응 기간제 근무자 급여 지원
- 나. 민간분야에 기금을 활용한 사업별 내역(당해 연도에 한함)

사업명	해당없음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효과	
예산내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자연재난과 (☎ 061-286-37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공고 제2023-652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도로공사 시행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 6. 1.

전라남도지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명	820호선
공사의 종류	보조급전구분소(SSP) 진출입로		
구 간	무안군 삼향읍 임성리 1071-9번지 일원		
공사시행장소	무안군 삼향읍 임성리 1071-9번지 일원		
착수 예정일	2023.5.	준공 예정일	2024. 12.

○ 허가 사유 : 임성리 보조급전구분소(SSP) 진출입로 개선공사

※ 도로관리청 아닌 자의 도로공사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

전라남도 공고 제2023-661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 6. 1.

전라남도지사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사항】

등록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주요사업
2023-1-전라남도-7호	진도군기수협회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3길 25, 2층	한정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도군 대중가수의 행사정보 및 대중활동 공유를 위한 제반 업무</li> <li>- 진도군 음악 산업의 성장을 위한 유관 단체 간 조정 및 협의기구 운영사업</li> <li>- 문화 소외계층 및 지역을 위한 공연 사업</li> <li>- 진도군 대중가수의 지위와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li> <li>- 기타 본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li> </ul>

전라남도 공고 제2023-662호

##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 등록신청을 수리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1.

## 전라남도지사

등록사업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지분금	주영업소의 소재지
(주)성암토건 염창곤	2023.5.25.	전남230001	1,422,740천원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중옥길 41-8, 204호

전라남도 공고 제2023-669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업체에 대하여 영업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보관기일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6. 1.

전라남도지사

1.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업 종 (등록번호)	위반내용	관련 근거	예정된 처분내용
(주)에스지종합건설 (이0영)	전남 목포시 정의로 14, 3층 303호	건축공사업 (01-3275)	실태조사를 위한 보고 (자료제출) 불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2개월)
(주)태진종합건설 (조0현)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45, 502호	건축공사업 (150591)	실태조사를 위한 보고 (자료제출) 불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2개월)
(주)튼튼종합건설 (강0도)	전남 나주시 송월3길 9, 2층	토목건축 공 사 업 (150491)	실태조사를 위한 보고 (자료제출) 불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2개월)
(주)비른종합건설 (김0철)	전남 나주시 그린로 379, 1동 701호	토목건축 공 사 업 (16-0171)	실태조사를 위한 보고 (자료제출) 불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2개월)
(유)새롬종합건설 (강0덕)	전남 여수시 국포1로 48, 1층	건축공사업 (150581)	실태조사를 위한 보고 (자료제출) 불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2개월)
시티증권(주) (김0호)	전남 여수시 오림1길 3층, 302호	토목건축 공 사 업 (150232)	실태조사를 위한 보고 (자료제출) 불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2개월)
이제이종합건설(주) (오0중)	전남 순천시 하품1길 18-3, 102호	건축공사업 (14-0585)	실태조사를 위한 보고 (자료제출) 불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2개월)

2. 공고기간 : 2023. 6. 1. ~ 2023. 6. 14.

## 3. 청문사항

- 일 시 : 2023. 6. 14.(수) 11:30부터 16:30분까지
- 장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12층 법무담당관실 청문장)
- 주재자 : 법무담당관실 법제팀장 황국주 또는 김안나 주무관

## 4. 안내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문 의 처 : 건설교통국 지역계획과(담당자 최준영 ☎ 061-286-7322)

## ※ 청문참석시 지참물

- 대표자 신분증(대리 참석시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

## ※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2023. 6. 14. 까지
- 제 출 처 : 전라남도 지역계획과
- 제출방법
  - 서 면(FAX) : 061-286-4802
  - 우편접수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지역계획과
- 기 타 : 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 년 월 일</p> <p>의견 제출인 : (서명 또는 인)</p> <p>전화번호 :</p> <p><b>전라남도지사 귀하</b></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지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목포시 고시 제2023-83호

『산정연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목포시 공고 제2022-181호(2022.10.24)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 『산정연산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새로이 조사 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며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로, 철도,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 6. 1.

목포시장

1. 사업의 명칭 및 개요

- 가. 사업명 : 『산정연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나. 사업위치 및 사업량

사업지구명	사업위치	사업량
산정연산지구	목포시 산정동 203-30일원	833필지(244,432.7㎡)

다. 사업시행자 : 목포시장

2. 사업의 목적

- 토지의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 해소 도모

3. 토지이용규제 내용 변경사항

사업지구명	토지이용규제 내용	변경사항
산정연산지구	○ 교통시설 - 대로3-7, 대로3-8, 중로1-12, 중로2-55, 중로3-10, 중로3-57, 소로2-37, 소로2-40, 소로2-42, 소로2-43, 소로2-85, 소로2-478, 소로2-557, 소로2-684, 소로3-23, 소로3-130, 소로3-131, 소로3-366, 일반철도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새로이 조사 · 등록된 지적도를 기준으로 선형 및 폭원변경

사업지구명	토지이용규제 내용	변경사항
	○ 공공문화체육시설 - 목포동초등학교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새로이 조사 · 등록된 지적도를 기준으로 경계 변경
	○ 지역특화발전규제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새로이 조사 · 등록된 지적도를 기준으로 경계 변경

4.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교통시설 결정(변경)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7	25	보조 간선도로	2,100	광2-1 산정동 1044-160도	대1-6 연산동 741-2도	일반 도로	대로 3-8	건설부고시 제1986-176호 (1986.04.29.)	-
변경	대로	3	7	25	보조 간선도로	2,100	광3-1 산정동 1044-160도	대1-6 연산동 741-2도	일반 도로	대로 3-8	건설부고시 제1986-176호 (1986.04.29.)	선형변경
기정	대로	3	8	25~28	보조 간선도로	2,680	대로3-4 용해동 940도	중로2-3 죽교동 79-9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87-80호 (1987.06.05.)	-
변경	대로	3	8	25~28	보조 간선도로	2,680	대로3-4 용해동 940도	중로2-3 죽교동 79-9도	일반 도로		전남고시 제1987-80호 (1987.06.05.)	선형변경
기정	중로	1	12	20	국지도로	1,511	대3-8 산정동 235-5대	중1-17 연산동 1252-1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87-80호 (1987.06.05.)	-
변경	중로	1	12	20	국지도로	1,511	대3-8 산정동 235-5대	중1-17 연산동 1252-1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87-80호 (1987.06.05.)	선형변경
기정	중로	2	55	18	국지도로	440	대3-7 연산동 1275도	중1-12 연산동 1275도	일반 도로	-	목포고시 제2007-42호 (2007.05.11.)	-
변경	중로	2	55	18	국지도로	440	대3-7 연산동 1275도	중1-12 연산동 1275도	일반 도로	-	목포고시 제2007-42호 (2007.05.11.)	선형변경
기정	중로	3	10	12	국지도로	344	대3-7 용당동 972-1도	중3-57 산정동 203-2대	일반 도로	대로 3-8	건설부고시 제1976-37호 (1976.03.27.)	-
변경	중로	3	10	12	국지도로	344	대3-7 용당동 972-1도	중3-57 산정동 203-30대	일반 도로	대로 3-8	건설부고시 제1976-37호 (1976.03.27.)	선형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57	13.5	집산도로	741	9호광장 산정동 1072-9철	대3-8 산정동 252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87-80호 (1987.06.05.)	-
변경	중로	3	57	13.5	집산도로	741	9호광장 산정동 48-17철	대3-8 산정동 252-2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87-80호 (1987.06.05.)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37	8	국지도로	120	대3-8 산정동 278-57대	소2-40 산정동 287-71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
변경	소로	2	37	8	국지도로	120	대3-8 산정동 280-10도	소2-40 산정동 287-88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40	8	국지도로	123	연산동 299-8	소2-37 산정동 287-71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
변경	소로	2	40	8	국지도로	123	연산동 299-8	소2-37 산정동 287-72대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42	8	국지도로	250	대3-8 산정동 271-1대	소3-23 연산동 350-2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
변경	소로	2	42	8	국지도로	250	대3-8 산정동 271-1대	소3-23 연산동 350-2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43	8	국지도로	225	대3-7 산정동 326-14도	대3-8 산정동 273-2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73-31호 (1973.06.14.)	-
변경	소로	2	43	8	국지도로	225	대3-7 산정동 325-9도	대3-8 산정동 273-1대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73-31호 (1973.06.14.)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85	8	국지도로	87	대3-8 산정동 253-21대	소2-557 산정동 1039-201대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
변경	소로	2	85	8	국지도로	87	대3-8 산정동 253-22도	산정동 1039-142대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478	8	국지도로	131	대3-8 산정동 270-73전	소3-557 산정동 269-1대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
변경	소로	2	478	8	국지도로	131	대3-8 산정동 270-73전	소3-557 산정동 269-1대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557	8	국지도로	79	대3-7 산정동 267전	소2-478 산정동 268-6대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2	557	8	국지도로	79	대3-7 산정동 267전	소2-478 산정동 268-6대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684	9-14	국지도로	182	중1-12 연산동 957-3도	소2-40 연산동 287-9도	일반 도로	-	목포고시 제2021-187호 (2021.11.04.)	-
변경	소로	2	684	9-14	국지도로	182	중1-12 연산동 957-3도	소2-40 연산동 287-9도	일반 도로	-	목포고시 제2021-187호 (2021.11.04.)	선형변경
기정	소로	3	23	6	국지도로	278	대3-7 연산동 327-8도	소2-43 산정동 305-2대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
변경	소로	3	23	6-9	국지도로	278	대3-7 연산동 327-19도	소2-43 산정동 308-29대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선형 및 폭원변경
기정	소로	3	130	6	국지도로	328	소1-93 산정동 270-59전	소2-85 산정동 1039-193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73-31호 (1973.06.14.)	-
변경	소로	3	130	6	국지도로	328	소2-478 산정동 270-93대	소2-85 산정동 1039-194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73-31호 (1973.06.14.)	선형변경
기정	소로	3	131	6	국지도로	96	대3-8 산정동 256-6도	소2-557 산정동 1039-184대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
변경	소로	3	131	6	국지도로	96	대3-8 산정동 256-6도	산정동 1039-132대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1977-68호 (1977.03.30.)	선형변경
기정	소로	3	366	6	국지도로	93	소3-23 산정동 305-70도	소2-37 산정동 287-3전	일반 도로	-	목포고시 제2007-42호 (2007.05.11.)	-
변경	소로	3	366	6	국지도로	93	소3-23 산정동 305-15대	소2-37 산정동 287-88전	일반 도로	-	목포고시 제2007-42호 (2007.05.11.)	선형변경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7	대로3-7	○선형변경 OB=25m, L=2,100m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도로 일부 선형변경
대로3-8	대로3-8	○선형변경 OB=28m, L=2,680m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도로 일부 선형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12	중로1-12	○선형변경 OB=20m, L=1,511m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도로 일부 선형변경
중로2-55	중로2-55	○선형변경 OB=18m, L=440m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도로 일부 선형변경
중로3-10	중로3-10	○선형변경 OB=12m, L=344m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도로 일부 선형변경
중로3-57	중로3-57	○선형변경 OB=13.5m, L=741m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도로 일부 선형변경
소로2-37	소로2-37	○선형변경 OB=8m, L=120m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도로 일부 선형변경
소로2-40	소로2-40	○선형변경 OB=8m, L=123m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도로 일부 선형변경
소로2-42	소로2-42	○선형변경 OB=8m, L=250m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도로 일부 선형변경
소로2-43	소로2-43	○선형변경 OB=8m, L=225m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도로 일부 선형변경
소로2-85	소로2-85	○선형변경 OB=8m, L=87m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도로 일부 선형변경
소로2-478	소로2-478	○선형변경 OB=8m, L=131m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도로 일부 선형변경
소로2-557	소로2-557	○선형변경 OB=8m, L=79m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도로 일부 선형변경
소로2-684	소로2-684	○선형변경 OB=9-14m, L=182m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도로 일부 선형변경
소로3-23	소로3-23	○선형 및 폭원변경 OB=6-9m, L=278m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도로 일부 선형 및 폭원변경
소로3-130	소로3-130	○선형변경 OB=6m, L=328m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도로 일부 선형변경
소로3-131	소로3-131	○선형변경 OB=6m, L=96m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도로 일부 선형변경
소로3-366	소로3-366	○선형변경 OB=6m, L=93m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도로 일부 선형변경

2) 철도

■ 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본선)	목포시 경계	목포시 호남동 1-1	임상리역, 석현공원, 목포체육관, 목포역	6,290	267,135	목포고시 제2008-42호 (2008.06.13.)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본선)	목포시 경계	목포시 호남동 1-1	임상리역, 석현공원, 목포체육관, 목포역	6,290	267,135	목포고시 제2008-42호 (2008.06.13.)	선형 변경

■ 철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철도	○ 일부 선형 변경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선형변경

나. 공공문화시설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8	목포동	초등학교	산정동 270-11	12,158	증)64.4	12,222.4	전남고시 제1987-80호 (1987.06.05.)	

■ 학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목포동 초등학교	○ 면적변경 - 12,158㎡ → 12,222.4㎡ (증 64.4㎡)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면적변경

5. 지형도면 : 게재생략

6. 열람방법 :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목포시 양을로 203)에 비치 및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7. 문 의 처 :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061-270-8118, 3669, 3417) 및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팀(061-270-8414)

여수시 고시 제2023-238호

###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 고시합니다.

2023. 6. 1.

#### 여수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신기동 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 나. 명 칭: 대광로제비양 아파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가. 면 적: 6,238.4㎡(도로 4,452㎡, 공원 1,786.4㎡)
  - 나. 규 모: L=345m, B=11m/L=41m, B=1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가. 성 명: (주)대국개발 대표 박준수
  - 나. 주 소 : ㄱ 지정: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1로 52, 117동 202호  
 ㄴ 변경: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B동 3층 301호
5. 사업의 기간(변경): ㄱ 지정: 2021. 4.22. ~ 2023. 5.31.  
 ㄴ 변경: 2021. 4.22. ~ 2023. 7.2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새로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여수시로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고시 제2023-172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 고시**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해제합니다.

2023. 6. 1.

**광양시장**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대상

지구	위 치	지정 내 용			지정·해제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		
다압하천	다압면 하천리 산17번지 일원	붕괴위험	D	14,250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소 해소	해제
다압금천	다압면 금천리 산4번지 일원	〃	D	9,780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소 해소	해제
옥룡용소	옥룡면 동곡리 산105-6번지 일원	〃	D	16,315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소 해소	해제
광양신촌	광양읍 세풍리 산21-5번지 일원	〃	D	12,280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소 해소	해제

2.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일 : 2023. 05. 31.

3. 문 의 처 : 광양시청 안전총괄과 ☎ 061-797-3266

## 지 형 도 면



## 지 형 도 면



## 지 형 도 면

지구명	옥룡 용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위치	옥룡면 동곡리 산105-6일원

## 지 형 도 면

지구명	광양 신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위치	광양읍 세풍리 산21-5일원

광양시 고시 제2023-173호

**광양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및 「도시계획법」(법률 제2291호)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3. 6. 1.

**광양시장**

1. 광양 도시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다음
2. 관계도면 : 계획생략(도시재생과 비치)
3. 관계도서는 광양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재생과(061-797-3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 조서(변경)

지구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광양시 황금동 산49번지 일원	922,215	감) 9	922,206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반영

2. 도시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97,647,000	감) 9	497,646,991	100.0	
주거 지역	소 계	17,751,434	감) 6	17,751,428	3.6	
	제2종전용주거지역	117,840	-	117,840	0.0	
	제1종일반주거지역	4,754,018	감) 2	4,754,016	1.0	
	제2종일반주거지역	8,278,482	감) 1	8,278,481	1.7	
	제3종일반주거지역	3,455,429	감) 2	3,455,427	0.7	
	준주거지역	1,145,665	감) 1	1,145,664	0.2	
상업 지역	소 계	2,258,780	감) 3	2,258,777	0.5	
	중심상업지역	746,566	-	746,566	0.2	
	일반상업지역	1,378,454	감) 3	1,378,451	0.3	
	근린상업지역	133,760	-	133,760	0.0	
공업 지역	소 계	48,819,041	-	48,819,041	9.8	
	일반공업지역	39,968,868	-	39,968,868	8.0	
	준공업지역	8,850,173	-	8,850,173	1.8	
녹지 지역	소 계	83,376,826	-	83,376,826	16.8	
	보전녹지지역	13,171,965	-	13,171,965	2.6	
	생산녹지지역	3,859,263	-	3,859,263	0.8	
	자연녹지지역	66,345,598	-	66,345,598	13.3	
도시지역 미지정		24,679,928	-	24,679,928	5.0	공유수면
관리 지역	소 계	92,315,539	-	92,315,539	18.6	
	보전관리지역	55,291,651	-	55,291,651	11.1	
	생산관리지역	12,575,361	-	12,575,361	2.5	
	계획관리지역	24,448,527	-	24,448,527	4.9	
농림지역		220,658,053	-	220,658,053	44.3	
자연환경보전지역		3,535,010	-	3,535,010	0.7	
비도시지역 미지정		4,252,389	-	4,252,389	0.9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서
		기정	변경			
-	황금동 산48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34,773	200	◦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황금동 119-2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43,617	250	◦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황금동 522-2일원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229,035	300	◦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황금동 537-7일원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87,934	500	◦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황금동 484-1일원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97,147	1,300	◦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변경) 조서

1) 도 로(변경)

○ 총괄표

노선명	노선수(소)		폭원(m)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광로3류	1	1	40	40	733	733	29,720	29,733.6	-
광로2류	1	1	50	50	8,216	8,216	-	1,109.9	-
대로2류	2	2	30	30	2,389	2,389	71,670	72,291.9	-
중로1류	7	7	20	20	2,508	2,508	50,160	51,149.3	-
중로2류	3	3	14~17	14~17	1,707	1,707	25,936	26,045.4	-
중로3류	10	10	12	12	1,648	1,648	19,776	20,136.6	-
소로1류	8	8	10	10	1,449	1,449	14,490	14,737.1	-
소로2류	45	45	8	8	6,738	6,738	53,904	55,156.7	-
소로3류	47	47	4~6	4~6	1,852	1,852	9,766	9,903.4	-
소계	123	123	-	-	19,024	19,024	275,422	280,263.9	-
가각전체면적(㎡)			-		-		(+)3,254.8	-	-
교차공제면적(㎡)			-		-		(-)3,869.9	-	-
버스 및 택시베이 진출입원화차로(㎡)			-		-		(+)3,063.0	-	-
합 계			-		-		277,869.9	280,263.9	-

※ 변경사유 : 확정측량면적반영

○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5	50	주간선 도로	8,216	11호광장	13호광장	일반도로	전남 259호 (02.12.13)	
소계	1개 노선				-	8,216	-	-	-	-	
기정	광로	3	2	40	주간선 도로	733	광로2-5호	중로1-146호	일반도로	전남 239호 (91.10.12)	
소계	1개 노선				-	733	-	-	-	-	
기정	대로	2	16	30	보조간선 도로	1,168	황금지구 서측경계	황금지구 동측경계	일반도로	전남 239호 (91.10.12)	
변경	대로	2	16	30-36	보조간선 도로	1,168	황금지구 서측경계	황금지구 동측경계	일반도로	전남 239호 (91.10.12)	가감속차로 확보
기정	대로	2	17	30	보조간선 도로	1,221	황금지구 서측경계	황금지구 동측경계	일반도로	전남 239호 (91.10.12)	
변경	대로	2	17	30-33	보조간선 도로	1,221	황금지구 서측경계	황금지구 동측경계	일반도로	전남 239호 (91.10.12)	가감속차로 확보
소계	2개 노선				-	2,389	-	-	-	-	
기정	중로	1	21	20	집산도로	208	중로1-146호	대로2-16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중로	1	22	20	집산도로	222	대로2-17호	대로2-16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중로	1	23	20	집산도로	250	광로2-5호	대로2-17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중로	1	24	20	집산도로	208	중로1-146호	대로2-16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중로	1	25	20	집산도로	222	대로2-17호	대로2-16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중로	1	26	20	집산도로	250	광로2-5호	대로2-17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중로	1	146	20	보조간선	1,148	황금지구 서측경계	황금지구 동측경계	일반도로	전남 239호 (91.10.12)	
기정	중로	2	184	16	집산도로	241	광로2-5호	대로2-17호	일반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중로	2	177	14-17	집산도로	743	광로2-5호	중로1-146호	일반 도로	전남 239호 (91.10.12)	
변경	중로	2	177	14-17	집산도로	743	광로2-5호	중로1-146호	일반 도로	전남 239호 (91.10.12)	가감속차로 확보
기정	중로	2	178	14-16	집산도로	723	광로2-5호	중로1-146호	일반도로	전남 239호 (91.10.12)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5	12	국지도로	44	중로1-23호	소로2-201호	일반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중로	3	16	12	국지도로	227	광로3-2호	중로1-21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중로	3	17	12	국지도로	256	중로1-22호	중로1-22호	일반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중로	3	18	12	국지도로	38	광로3-2호	중로3-17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중로	3	19	12	국지도로	260	광로3-2호	중로1-23호	일반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중로	3	20	12	국지도로	227	광로3-2호	중로1-24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중로	3	21	12	국지도로	256	중로1-25호	중로1-25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중로	3	22	12	국지도로	38	광로3-2호	중로3-21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중로	3	23	12	국지도로	260	광로3-2호	중로1-26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중로	3	24	12	국지도로	42	중로1-26호	소로2-223호	일반도로	전남 제92호 (00.5.08)	
소계	20개 노선				-	5,866	-	-	-	-	
기정	소로	1	50	10	국지도로	222	대로2-17호	대로2-16호	일반도로	전남 제92호 (00.5.08)	
변경	소로	1	50	10	국지도로	219	대로2-17호	대로2-16호	일반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가감속차로 확보
기정	소로	1	51	10	국지도로	40	중로2-177호	소로2-189호	일반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1	52	10	국지도로	120	소로1-53호	소로2-189호	일반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1	53	10	국지도로	209	대로2-17호	소로2-202호	일반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1	55	10	국지도로	209	대로2-17호	소로2-202호	일반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1	58	10	국지도로	221	중로2-178호	중로1-24호	일반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1	59	10	국지도로	221	대로2-17호	대로2-16호	일반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60	10	국지도로	207	대로2-17호	소로2-229호	일반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2	181	8	국지도로	224	중로1-21호	중로1-21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182	8	국지도로	114	소로1-50호	소로2-185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183	8	국지도로	114	소로1-50호	소로2-185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184	8	국지도로	114	소로1-50호	소로2-185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185	8	국지도로	88	소로2-182호	소로2-184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186	8	국지도로	237	중로1-22호	중로1-22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188	8	국지도로	144	소로1-53호	소로2-189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189	8	국지도로	182	소로2-202호	소로2-188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190	8	국지도로	182	소로2-202호	소로2-188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191	8	국지도로	182	소로2-202호	소로2-188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192	8	국지도로	122	소로1-54호	소로1-53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193	8	국지도로	182	소로2-202호	소로2-192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194	8	국지도로	182	소로2-202호	소로2-192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195	8	국지도로	120	소로1-55호	중로2-184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196	8	국지도로	182	소로2-202호	소로2-195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197	8	국지도로	182	소로2-202호	소로2-195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198	8	국지도로	139	소로1-55호	소로2-201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99	8	국지도로	182	소로2-202호	소로2-198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200	8	국지도로	182	소로2-202호	소로2-198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201	8	국지도로	182	소로2-202호	소로2-198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202	8	국지도로	558	소로2-201호	소로2-189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206	8	국지도로	87	소로1-58호	소로2-207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207	8	국지도로	123	소로1-58호	소로2-206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208	8	국지도로	49	소로1-58호	소로2-208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209	8	국지도로	141	소로2-208호	소로2-210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210	8	국지도로	41	소로1-58호	소로2-209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211	8	국지도로	42	중로1-25호	소로2-214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212	8	국지도로	96	소로1-59호	소로2-214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213	8	국지도로	68	소로1-59호	소로2-217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214	8	국지도로	165	소로2-219호	소로2-212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215	8	국지도로	165	소로2-219호	소로2-212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216	8	국지도로	165	소로2-220호	소로2-213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217	8	국지도로	167	소로2-220호	소로2-213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218	8	국지도로	32	중로2-178호	소로2-217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219	8	국지도로	96	소로1-59호	소로3-150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20	8	국지도로	107	소로1-59호	소로2-217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221	8	국지도로	96	소로1-60호	소로2-223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222	8	국지도로	119	소로1-60호	소로2-227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223	8	국지도로	182	소로2-229호	소로2-221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224	8	국지도로	181	소로2-229호	소로2-221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225	8	국지도로	175	소로2-229호	소로2-222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226	8	국지도로	173	소로2-229호	소로2-222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227	8	국지도로	172	소로2-229호	소로2-222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228	8	국지도로	40	중로2-178호	소로2-227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2	229	8	국지도로	262	소로2-223호	소로2-227호	일반도로	동광양 19호 (94.12.26)	
기정	소로	3	121	6	특수도로	206	중로1-146호	대로2-16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122	6	특수도로	19	대로2-17호	소로2-198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123	6	특수도로	12	광로2-5호	소로3-673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673	6	국지도로	23	소로3-123호	소로2-202호	일반도로	광양 제199호 (22.6.09)	
기정	소로	3	124	6	특수도로	35	광로2-5호	소로2-202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126	6	특수도로	15	광로2-5호	소로3-674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674	6	국지도로	20	소로3-126호	소로2-202호	일반도로	광양 제199호 (22.6.09)	
기정	소로	3	127	6	특수도로	12	광로2-5호	소로3-675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675	6	국지도로	20	소로3-127호	소로2-202호	일반도로	광양 제199호 (22.6.09)	
기정	소로	3	130	6	특수도로	19	대로2-17호	소로2-188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131	4	특수도로	105	소로1-53호	소로1-54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132	4	특수도로	103	소로1-54호	소로1-55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133	4	특수도로	114	소로1-55호	소로2-201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134	6	특수도로	21	광로3-2호	소로3-676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676	6	국지도로	17	소로3-134호	중로3-20호	일반도로	광양 제199호 (22.6.09)	
기정	소로	3	135	6	특수도로	24	중로1-24호	소로3-677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677	6	국지도로	26	소로3-135호	중로3-20호	일반도로	광양 제199호 (22.6.09)	
기정	소로	3	136	6	특수도로	38	광로3-2호	중로3-16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137	6	특수도로	28	중로1-21호	소로3-678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678	6	국지도로	22	소로3-137호	중로3-16호	일반도로	광양 제199호 (22.6.09)	
기정	소로	3	138	6	특수도로	10	대로2-16호	소로3-679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679	6	국지도로	23	소로3-138호	중로3-21호	일반도로	광양 제199호 (22.6.09)	
기정	소로	3	139	6	특수도로	33	대로2-17호	중로3-21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140	6	특수도로	33	대로2-16호	중로3-17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141	6	특수도로	33	대로2-17호	중로3-17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142	6	특수도로	26	중로1-26호	소로3-680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680	6	국지도로	24	소로3-142호	중로3-23호	일반도로	광양 제199호 (22.6.09)	
기정	소로	3	143	6	특수도로	38	광로3-2호	중로3-23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144	6	특수도로	50	중로1-23호	중로3-19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145	6	특수도로	38	광로3-2호	중로3-19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146	4	특수도로	158	소로2-214호	소로2-217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147	6	특수도로	37	대로2-16호	소로2-209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148	6	특수도로	19	대로2-16호	소로2-212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149	6	특수도로	19	대로2-16호	소로2-213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150	6	특수도로	20	대로2-17호	소로2-219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151	6	특수도로	20	대로2-17호	소로2-220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152	6	특수도로	19	대로2-17호	소로2-221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153	6	특수도로	19	대로2-17호	소로2-222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154	6	특수도로	12	광로2-5호	소로3-681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681	6	국지도로	23	소로3-154호	소로2-229호	일반도로	광양 제199호 (22.6.09)	
기정	소로	3	155	6	특수도로	35	광로2-5호	소로2-229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156	6	특수도로	12	광로2-5호	소로3-682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기정	소로	3	682	6	국지도로	20	소로3-156호	소로2-229호	일반도로	광양 제199호 (22.6.09)	
기정	소로	3	157	4	특수도로	193	소로2-223호	소로2-228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 제92호 (00.5.08)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55	6	특수도로	9	대로2-16호	소로3-683호	보행자 전용도로	광양 13호 (98.4.28)	
기정	소로	3	683	6	국지도로	30	소로3-355호	소로2-208호	일반도로	광양 제199호 (22.6.09)	
기정	소로	3	356	6	특수도로	20	중로1-146호	소로2-206호	보행자 전용도로	광양 13호 (98.4.28)	
소계	100개 노선				-	10,100	-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16	대로2-16	◦ 폭원 변경 - B=30m → 30~36m(증 6m)	◦ 기감속차로 확보로 인한 폭원 변경
대로2-17	대로2-17	◦ 폭원 변경 - B=30m → 30~33m(증 3m)	◦ 기감속차로 확보로 인한 폭원 변경
중로2-177	중로2-177	◦ 기감속차로 추가 1개소 확보 - B=14~17m	◦ 기감속차로 확보
소로1-50	소로1-50	◦ 연장변경 - L=222m → 219m(감 3m)	◦ 기감속차로 확보로 인한 연장 변경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2개소					11,970	-	11,970	
기정	23	주차장	노외주차장	황금동 신9임	1,490	-	1,490	
기정	24	주차장	노외주차장	황금동 445-1답	1,490	-	1,490	
기정	25	주차장	노외주차장	황금동 162-2답	1,300	-	1,300	
기정	20	주차장	노외주차장	황금동 산33-1임	1,300	-	1,300	
기정	21	주차장	노외주차장	황금동 산20임	1,490	-	1,490	
기정	22	주차장	노외주차장	황금동 산25-1임	1,300	-	1,300	
기정	26	주차장	노외주차장	황금동 신9임	600	-	600	
기정	27	주차장	노외주차장	황금동 15-2전	600	-	600	
기정	28	주차장	노외주차장	황금동 133-1전	600	-	600	
기정	17	주차장	노외주차장	황금동 46임	600	-	600	
기정	19	주차장	노외주차장	황금동 382-2답	600	-	600	
기정	18	주차장	노외주차장	황금동 364-1전	600	-	600	

3) 공원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개소)					30,470	증) 12.9	30,482.9	
변경	11	평촌공원	근린공원	황금동 414번지 일원	18,070	감) 19.4	18,050.6	
변경	66	황금 1	어린이공원	황금동 산1-4번지 일원	1,500	증) 6.9	1,506.9	
변경	64	황금 4	어린이공원	황금동 357번지 일원	1,500	증) 23.0	1,523.0	
변경	186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황금동 산142-1번지 일원	9,400	증) 2.4	9,402.4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1	평촌공원	◦ 면적 변경 - 18,070㎡→18,050.6㎡ (감 19.4㎡)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66	황금 1	◦ 면적 변경 - 1,500㎡→1,506.9㎡ (증 6.9㎡)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64	황금 4	◦ 면적 변경 - 1,500㎡→1,523㎡ (증 23㎡)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186	어린이공원	◦ 면적 변경 - 9,400㎡→9,402.4㎡ (증 2.4㎡)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 공원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첨

4) 녹지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3개소)					17,398.9	감) 522	16,876.9	
변경	24	녹지	원충녹지	광로2-5호선 변	14,723.9	감) 553.6	14,170.3	
변경	49	녹지	원충녹지	어린이공원186 복측가로변	1,865.0	증) 34.3	1,899.3	
변경	50	녹지	원충녹지	초등학교 복측가로변	810.0	감) 2.7	807.3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24	녹지	◦ 면적 변경 - 14,723.9㎡→14,170.3㎡ (감, 553.6㎡)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49	녹지	◦ 면적 변경 -1,865.0㎡→1,899.3㎡ (증 34.3㎡)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49	녹지	◦ 면적 변경 - 810㎡→807.3㎡ (감 2.7㎡)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5) 광장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3개소)					2,850	-	2,850	
기정	25	광장	미관광장	광로 3-2호선 변	950	-	950	
기정	26	광장	미관광장	광로 3-2호선 변	950	-	950	
기정	27	광장	미관광장	광로 3-2호선 변	950	-	950	

6) 학교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1개소)					20,000	-	20,000	
기정	12	학교	초등학교	황금동 산48입	20,000	-	20,000	

7) 가스공급설비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1개소)				25	-	25	-	
기정	3	가스공급설비	광양시 황금동 423	25	-	25	-	

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1) 근린공원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시설내용	시 설 면 적 (㎡)			비 고
		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기정	변경		
총계	-	18,070.0	18,050.6	-	-
기반시설	도로·광장	2,181.0	2,181.0	-	-
편익시설	음수전	10.2	10.2	-	-
녹지 및 기타	녹지	15,878.8	15,859.4	-	녹지율 87.8%

○ 도로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	-	-	-	1,430.0	-	-	-	
소로	3류	1	3.0	98.8	296.5	연결로	진입광장A	진입광장B	
소로	3류	2	3.0	119.9	359.9	연결로	진입광장A	연결로1	
소로	3류	3	3.0	141.1	423.5	연결로	진입광장B	연결로1	
소로	3류	4	3.0	115.1	350.1	연결로	연결로1	진입광장C	

○ 시설조서

시설 구분	기호	시설명	위 치	시설면적(㎡)			규모수량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기정	변경			
계				18,070.0	18,050.6	-	1	
기 반 시설		소 계		2,181.0	2,181.0	-	-	
		도 로		1,430.0	1,430.0	-	-	
	1	광 장		751.0	751.0	-	-	
	-1	진입광장A		257.0	257.0	-	-	
	-2	진입광장B		257.0	257.0	-	-	
	-3	진입광장C		237.0	237.0	-	-	
편 익 시설		소 계		10.2	10.2	-	1	
	2	음수전		10.2	10.2	-	1	
녹지및 기타		소 계		15,878.8	15,859.4	-	-	
		녹 지		15,878.8	15,859.4	-	-	녹지율 87.8%

2) 어린이공원1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시설내용	시 설 면 적(㎡)			비 고
		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기정	변경		
총계	-	1,500.0	1,506.9	-	-
기반시설	도로	344.1	344.1	-	-
녹지 및 기타	녹지	1,155.9	1,162.8	-	녹지율 77.1%

○ 도로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	-	-	-	344.1	-	-	-	
소로	3류	1	3.5	98.3	344.1	연결로			

○ 시설조서

시설 구분	기호	시설명	위 치	시설면적(㎡)			규모수량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기정	변경			
계				1,500.0	1,506.9	-	-	
기 반 시설		소 계		344.1	344.1	-	-	
		도 로		344.1	344.1	-	-	
녹지및 기타		소 계		1,155.9	1,162.8	-	-	
		녹 지		1,155.9	1,162.8	-	-	녹지율 77.1%

3) 어린이공원2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시설내용	시 설 면 적 (㎡)			비 고
		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기정	변경		
총계	-	1,500.0	1,523.0	-	-
기반시설	도로	257.1	257.1	-	-
녹지 및 기타	녹지	1,242.9	1,265.9	-	녹지율 83.1%

○ 도로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	-	-	-	257.1	-	-	-	
소로	3류	1	3.5	73.4	257.1	연결로			

○ 시설조서

시설 구분	기호	시설명	위 치	시설면적(㎡)			규모수량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기정	변경			
계				1,500.0	1,523.0	-	-	
기 반 시설		소 계		257.1	257.1	-	-	
		도 로		257.1	257.1	-	-	
녹지및 기타		소 계		1,242.9	1,265.9	-	-	
		녹 지		1,242.9	1,265.9	-	-	녹지율 83.1%

3) 어린이공원3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시설내용	시 설 면 적 (㎡)			비 고
		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기 정	변 경		
총계	-	9,400.0	9,402.4	24.8	-
기반시설	도로	260.2	260.2	-	-
편익시설	화장실	24.8	24.8	24.8	-
녹지 및 기타	녹지	9,115.0	9,117.4	-	녹지율 96.9%

○ 도로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	-	-	-	260.2		-	-	
소로	3류	1	1.0	260.2	260.2	연결로			

○ 시설조서

시설 구분	기호	시설명	위 치	시설면적(㎡)			규모수량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기정	변경			
계				9,400	9,402.4	24.8	1	
편익 시설		소 계		24.8	24.8	24.8	1	
		화 장 실		24.8	24.8	24.8	1	
녹지및 기타		소 계		9,115	9,117.4	-	-	
		녹 지		9,115	9,117.4	-	-	녹지율 96.9%
기반 시설		소계		260.2	260.2	-	-	
		도 로		260.2	260.2	-	-	

광양시 공고 제2023-1191호

광양 도시계획시설(백운유원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 공고

광양시 봉강면 지곡리 산3-1번지 외 1필지에 광양 도시계획시설(백운유원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9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1.

광양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 당 초: 광양시 봉강면 지곡리 산3-1번지
  - 변 경: 광양시 봉강면 지곡리 산3-1번지 외 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광양 도시계획시설(백운유원지)사업
  - 명 칭: 백운유원지 휴양시설(숙박시설2-1-1) 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변경)

구 분	부지면적(㎡)			시 설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8,579	감)111.3	18,467.7	510.98	526.09	813.38	823.75		
시설소계	18,579	감)111.3	18,467.7	510.98	526.09	813.38	823.75		
휴양시설	운동시설	456.4	증)612.6	1,069.00					놀이시설
	휴양시설	2,774.4	증) 22.6	3,097.00					글램핑장(17면), 휴식공간
	편의시설	302.4	증) 15.1	317.51	302.4	317.51	604.8	615.17	일반음식점
	조경시설	1,310.3	증)100.2	1,410.50					
	관리시설	5,425.5	감)251.9	5,173.58	208.58	208.58	208.58	208.58	관리동(2동), 도로, 광장, 주차장
녹 지	8,310.0	감)111.3	7,400.1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손성경
- 주 소 : 광양시 가야로 345, 10\*동 50\*호

5. 사업착수 및 준공 예정일(변경없음)

- 2017. 1. 26. ~ 2023.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변경)

- 기 정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고
1	봉강면	지곡리	산3-1	임야	18,579	18,579	손*경, 이*목	-

- 변 경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고
1	봉강면	지곡리	산3-1	임야	18,116.9	18,116.9	손*경, 이*목	-
2	봉강면	지곡리	산4-1	임야	5,577	350.8	김*원	
총2필지					28,693.9	18,467.7		

7. 열람 공고 기간 및 장소

- 기 간: 2023. 6. 1. ~ 2023. 6. 15.(14일간)
- 장 소: 광양시청 도시재생과

8. 관계도서 : 게재 생략(광양시청 도시재생과 비치)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재생과(☎061-797-2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공고 제2023-1199호

광양 도시계획시설(중로 1-12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665-5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계획시설(중로 1-123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1.

광양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665-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광양 도시계획시설(중로 1-123호선)사업
  - 명 칭: 도시계획도로(광양읍 우시장사거리~시계탑) 확·포장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9,313㎡
  - 규 모: L= 458m, B=2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광양시장(도로과장)
  -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5.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예정일: 2025.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다음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광양시청 도시재생과 및 도로과 비치)
8. 열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3. 6. 1. ~ 2023. 6. 15.
  - 장 소 : 광양시청 도시재생과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로과(☎061-797-2492) 및 도시재생과(☎061-797-2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1	목성리	856-3	도	1	1	국토교통부	국				
2	목성리	1028-41	도	344	6	광양시	공				
3	목성리	1028-39	도	4,312	4,312	광양시	공				
4	목성리	855-3	도	30	30	국토교통부	국				
5	목성리	855-4	대	10	10	광양시	공				
6	목성리	853-2	도	6	6	광양시	공				
7	목성리	854-3	도	33	33	국토교통부	국				
8	목성리	854-6	대	3	3	광양읍 용강리 ***-*	박*배				
9	목성리	853-4	대	2	2	광양읍 용강리 ***-*	박*배				
10	목성리	854-2	대	2	2	광양읍 용강리 ***-*	박*배				
11	목성리	850-4	대	4	4	광양읍 용강리 ***-*	박*배				
12	목성리	849-2	도	20	20	국토교통부	국				
13	목성리	850-2	도	13	13	광양시	공				
14	목성리	848-2	도	10	10	국토교통부	국				
15	목성리	848-5	도	5	5	광양시	공				
16	목성리	847-2	도	26	26	국토교통부	국				
17	목성리	847-3	도	12	12	광양시	공				
18	목성리	839-6	도	6	6	광양시	공				
19	목성리	839-5	도	6	6	광양시	공				
20	목성리	839-2	도	20	20	국토교통부	국				
21	목성리	839-9	대	23	2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	최*호 외1인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현조길 *-**	김*엽	공유자	
22	목성리	716-2	도	68	68	광양시	공				
23	목성리	718-3	도	29	29	광양시	공				
24	목성리	718-4	도	5	5	광양시	공				
25	목성리	719-6	도	4	4	광양시	공				
26	목성리	719-8	도	1	1	광양시	공				
27	목성리	719-7	도	7	7	광양시	공				
28	목성리	719-10	대	1	1	광양시	공				
29	목성리	719-9	대	6	6	광양시	공				
30	목성리	723-5	도	11	11	광양시	공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31	목성리	856-4	도	823	1	광양시	공				
32	목성리	723-6	도	11	1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김*동				
33	목성리	723-4	도	13	13	광양시	공				
34	목성리	724-6	도	41	41	광양시	공				
35	목성리	725-13	대	4	4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학사대길 *	서*순				
36	목성리	722-8	도	26	26	광양시	공				
37	목성리	725-12	도	5	5	광양시	공				
38	목성리	726-10	도	1	1	광양시	공				
39	목성리	726-9	도	7	7	광양시	공				
40	목성리	635-7	도	7	7	광양시	공				
41	목성리	635-9	도	2	2	광양시	공				
42	목성리	635-10	도	11	11	광양시	공				
43	목성리	635-8	도	31	31	광양시	공				
44	목성리	636-4	도	11	11	광양시	공				
45	목성리	636-5	도	13	13	광양시	공				
46	목성리	637-5	도	21	21	광양시	공				
47	목성리	637-4	도	14	14	광양시	공				
48	목성리	637-3	도	5	5	광양시	공				
49	목성리	644-7	도	26	26	광양시	공				
50	목성리	644-13	도	6	6	국토교통부	국				
51	목성리	622-13	도	3	3	광양시	공				
52	목성리	844-9	도	76	76	광양시	공				
53	목성리	846-2	도	193	38	국토교통부	국				
54	목성리	846-15	대	25	25	광주광역시 북구 장운길 ***_** (장등동)	최*자				
55	목성리	846-12	도	18	18	광양시	공				
56	목성리	846-14	대	257	257	광주광역시 북구 장운길 ***_** (장등동)	최*자				
57	목성리	846-10	대	11	11	광주광역시 북구 장운길 ***_** (장등동)	박*정 외1인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 ***동***호 (도평리 1차우림푸전빌아파트)	임*화	근저당권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관계	
58	목성리	846-16	대	70	7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	동**씨창원공파 광양종중				
59	목성리	846-11	도	17	17	광양시	공				
60	목성리	846-13	대	151	151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_* 우림빌라***호	김*구				
61	목성리	844-8	대	20	20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_* 우림빌라***호	김*구				
62	목성리	840-4	도	10	10	광양시	공				
63	목성리	844-2	대	456	1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_* 우림빌라***호	김*구				
64	목성리	840-2	대	16	16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_*	소*진				
65	목성리	840-5	대	109	109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	주*심				
66	목성리	840-3	도	22	22	광양시	공				
67	목성리	715-9	대	22	2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	주*심				
68	목성리	715-8	대	96	96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	이*직				
69	목성리	715-5	도	28	28	광양시	공				
70	목성리	715-7	대	82	82	광양시	공				
71	목성리	715-6	도	9	9	광양시	공				
72	목성리	715-10	대	52	52	광양시	공				
73	목성리	714-20	대	4	4	광양시	공				
74	목성리	714-22	대	2	2	광양시	공				
75	목성리	714-10	도	18	18	광양시	공	광양시			
76	목성리	714-24	대	100	100	광양시	공				
77	목성리	714-25	대	24	24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_*	박*삼	광양시			
78	목성리	714-12	도	7	7	광양시	공				
79	목성리	715-1	전	1	1	기획재정부	국				
80	목성리	714-23	대	38	38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_*	박*삼				
81	목성리	714-1	전	3	3	기획재정부	국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82	목성리	714-13	도	1	1	광양시	공				
83	목성리	714-11	도	14	14	광양시	공				
84	목성리	714-21	대	74	74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_*	상*덕				
85	목성리	708-4	도	20	20	광양시	공				
86	목성리	708-6	대	102	10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_*	한*의				
87	목성리	708-3	도	33	33	광양시	공				
88	목성리	708-5	대	168	168	광양시	공				
89	목성리	706-4	대	23	2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문*표외1인	부산시 동래구 구서동 ***_*주공아파트 **동 ***호	김*백	공유자	
90	목성리	707-6	도	110	110	광양시	공				
91	목성리	707-1	도	7	7	광양시	공				
92	목성리	705-34	도	7	7		광양시 와이인	인서리 ***	백*용	공유자	
93	목성리	705-33	대	74	74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삼삼리*** 부영아파트 ***_***	백*갑	인동리 ***	우*문	공유자	
94	목성리	705-26	도	11	11	광양시	공				
95	목성리	705-35	대	51	51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중흥파크에스클래스빌***_* ***	우*근외1인				
96	목성리	705-28	도	6	6	광양시	공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사운길 **_*	김*곤	공유자	
97	목성리	705-3	대	50	5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_*	한*배				
98	목성리	705-27	도	6	6	광양시	공				
99	목성리	705-36	대	42	4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오성타워맨션***_***	김*근				
100	목성리	705-29	도	5	5	광양시	공				
101	목성리	705-37	대	30	3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웅강1길**, ***동***호 (창덕에버빌아파트)	김*애				
102	목성리	705-38	대	29	29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_*	정*태				
103	목성리	705-32	도	44	44	국토교통부	국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104	목성리	705-39	대	1	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_**	이*희				
105	목성리	688-11	도	1	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	김*용				
106	목성리	688-10	도	3	3	광양시	공				
107	목성리	688-1	대	50	5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	이*순				
108	목성리	688-13	대	78	78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와룡길**, ***동****호 (광양송보파인빌7차)	이*철				
109	목성리	688-9	도	5	5	광양시	공				
110	목성리	688-5	대	51	5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_**	광**씨광양 종친회				
111	목성리	688-12	대	16	16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와룡길**, ***동****호 (광양송보파인빌7차)	이*철외1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시장길 **_*	이*심	공유자	
112	목성리	687-5	도	12	12	광양시	공				
113	목성리	687-9	대	66	66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초남길 **	상*기				
114	목성리	687-8	대	127	127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_*	정*림				
115	목성리	687-7	도	19	19	광양시	공				
116	목성리	687-6	도	13	13	광양시	공				
117	목성리	687-10	대	95	95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유당로 **	송*섭외3인	전남 수년시 망산길 *, *층(기공동, 등지원룸)	송*임	공유자	
								전남 여수시 무선로 **, ***동 ****호 (학동, 신동아피밀리에)	송*자	공유자	
								전남 여수시 여문*로 ***, ***동 ***호 (문수동, 세종캐슬하임아파트)	송*섭	공유자	
119	목성리	686-6	도	14	14	광양시	공				
119	목성리	686-9	대	67	67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_*	김*두외2인	전남 순천시 해룡면 기적의도서관길 **, ***동 ***호 (부영아파트)	황*호	공유자	
								전남 광양시 공영로 **, ***동 ***호 (중동, 금광아파트)	박*근	공유자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120	목성리	686-4	대	2	2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기적의도서관길 ** , ***동 ***호 (부영아파트)	황*호외2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_*	김*두	공유자	
								전남 광양시 공영로 ** , ***동 ***호 (중동,금광아파트)	박*근	공유자	
121	목성리	686-11	대	1	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_*	김*열				
122	목성리	686-10	대	88	88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_*	김*열				
123	목성리	686-7	도	19	19	광양시	공				
124	목성리	685-8	전	41	4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유당로 **	송*섭				
125	목성리	686-5	대	1	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유당로 **	송*섭				
126	목성리	686-8	도	5	5	광양시	공				
127	목성리	685-6	도	4	4	광양시	공				
128	목성리	685-9	창	62	6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유당로 **	송*섭				
129	목성리	685-4	도	20	20	광양시	공				
130	목성리	685-7	대	130	13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	함*욱				
131	목성리	685-5	도	8	8	광양시	공				
132	목성리	685-2	대	48	48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	강*철				
133	목성리	681-9	대	10	10	순천시 매곡동 *** 아파트 ***동 ***호	이*우외1인	여수시 둔덕동 **-* 남해화학사택 비동 ***호	한*삼	공유자	
134	목성리	681-10	대	40	40	순천시 매곡동 *** 아파트 ***동 ***호	이*우외1인	여수시 둔덕동 **-* 남해화학사택 비동 ***호	한*삼	공유자	
135	목성리	681-11	대	59	59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_*	삼*철				
136	목성리	681-5	도	4	4	광양시	공				
137	목성리	618-6	도	8	8	광양시	공				
138	목성리	681-7	도	13	13	광양시	공				
139	목성리	681-12	대	127	127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_*	이*욱				
140	목성리	681-4	대	62	6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_*	김*자외1인	전남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_*	배*길	공유자	
141	목성리	681-8	도	17	17	광양시	공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142	목성리	668-4	대	12	1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	조*수외1인	전남 광양시 광양읍목성리 ***-*	김*자	공유자	
143	목성리	668-5	대	97	97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	김*자				
144	목성리	667-1	대	83	8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	사*례				
145	목성리	667-5	대	110	11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	강*호				
146	목성리	667-4	도	8	8	광양시	공				
147	목성리	667-6	대	1	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	박*수				
148	목성리	666-3	도	17	17	광양시	공				
149	목성리	666-5	대	94	94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	하*현				
150	목성리	666-4	도	10	10	광양시	공				
151	목성리	666-6	대	81	8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	김*기				
152	목성리	665-6	도	15	15	광양시	공				
153	목성리	669-10	대	44	44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 ***동****호 (목동,목동파라곤)	김*연외1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 ***동****호 (중산동,디엠씨센트럴자이)	김*현	근저당권	
154	목성리	665-1	대	138	138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	김*숙				
155	목성리	664-5	도	1,399	1	광양시	공				
156	목성리	673-7	도	34	34	국토교통부	국				
157	목성리	665-5	도	6	6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	이*원				
합 계				12,503	9,313						

강진군 공고 제2023-493호

강진 군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중로2-16(강진만 생태공원진입로)] 개설공사 완료 공고

1. 강진군 고시 제2017-579호(2017.07.07)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중로2-16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진군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 6. 1.

강진군수

공사완료 공고 내용

구분	공고내용	비고
1. 사업시행 위치	▫ 사업위치 :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36-7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강진 군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사업 ▫ 사업명칭 : 중로2-16(강진만 생태공원 진입로 개설)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도시계획도로 개설 : L=531m, B=15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 성명 : 강진군수(건설과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일	▫ 착수일 : 2017. 03. 20. ▫ 준공일 : 2018. 03. 19.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다음	
7. 준공도서	▫ 관계도서 : 게재생략(강진군청 건설과 비치)	
8. 기타 문의	▫ 문의전화 : 061-430-3992(강진군청 건설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소유권 및 권리 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공사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군	읍	리			지적	편입	주소	성명	
강진	강진	남포	36-7	답	2384	152		강진군	
강진	강진	남포	37-12	답	2149	4		강진군	
강진	강진	남포	37-14	답	1457	39		강진군	
강진	강진	남포	67-1	답	119	51		강진군	
강진	강진	남포	68-3	답	95	40		강진군	
강진	강진	남포	96-1	대	264	35		강진군	
강진	강진	남포	96-3	대	80	49		강진군	
강진	강진	남포	97	대	179	6		강진군	
강진	강진	남포	524	답	1571	18		강진군	
강진	강진	남포	525	답	1884	21		강진군	
강진	강진	남포	525	답	1884	413		강진군	
강진	강진	남포	527	답	2572	45		강진군	
강진	강진	남포	530	답	1069	406		강진군	
강진	강진	남포	531	답	1476	413		강진군	
강진	강진	남포	532	답	1829	413		강진군	
강진	강진	남포	533	답	1835	409		강진군	
강진	강진	남포	534	답	1835	406		강진군	
강진	강진	남포	535	답	1835	408		강진군	
강진	강진	남포	536	답	1835	410		강진군	
강진	강진	남포	537	답	1835	407		강진군	
강진	강진	남포	538	답	1835	402		강진군	
강진	강진	남포	539	답	1835	406		강진군	
강진	강진	남포	540	답	2043	576		강진군	

## 무안군 공고 제2023-571호

## 무안 군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남악 신도시 자전거 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무안 군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1.

## 무안군수

1.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614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명칭 : 남악 신도시 자전거공원 정비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공공공지 15,36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무안군수
  - 주 소 :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신도시지원단)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다음
7. 열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3. 6. 1. ~ 2023. 6. 14. (14일간)
  - 장 소 : 무안군청 신도시지원단(061-450-416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성명	주소	권리 구분	성명	주소
계										
1	삼향읍 남약리	2614	공	15,360.9	15,360.9	무안군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신안군 고시 제2023-37호

신안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신안군 팔금면 장촌리 294번지 일원 “세대 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신안 군 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안 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3. 6. 1.

신안군수

1. 신안 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 다음
2. 신안 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면 : 게재 생략
3. 관계 도서는 신안군청 귀촌지원센터 및 신재생에너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귀촌지원센터(☎061-240-8225), 신재생에너지과(☎061-240-84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 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44	학교	중학교	팔금면 장촌리 294	18,217	감)18,217	-	신안고 제2009-73호 (2009.10.01.)	안좌중학교 팔금분교장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유
학교 44	학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 지</li> <li>◦ 면 적 : 18,21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3월경 폐교되어 방치된 안좌중학교 팔금분교장을 세대 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하여 학교시설 폐지</li> </ul>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8호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결정 고시

제135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 의결을 얻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예산의 이송·고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6. 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	기정예산	증△감		비고
			금 액	비율(%)	
합 계	183,886,604	184,123,950	△237,346	0.1	
일반회계	43,587,982	43,825,328	△237,346	0.5	
특별회계	140,298,622	140,298,622	0	0.0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40,298,622	140,298,622	0	0.0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계로 준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생명의땅 으뜸진남

발행인 전라남도 편집인 대변인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061-286-2073